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882-10

2016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Contents

I 개 요

1. 목적 및 연혁	3
2. 사업 추진체계	4
3. 운영 형태	5
4. 주요 현황	7

II 기부식품제공사업 관리

1. 기부식품제공사업 신고제도	11
2. 기부식품 이용자 관리	15
3.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	17
4. 기부식품 관리	21
5.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인력관리 등	27
6. 기부식품 사업자 신고의 철회·폐업	29
7.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30
8.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32

III 기 타

1. 붙임 자료	
(1) 사업자 신고서	38
(2) 기부식품제공 사업계획서(예시)	39
(3) 사업자 신고증	40
(4)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신청서	42
(5) 기부식품 영수증(예시)	44
(6) 기부금 영수증	45
(7)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명세서	46
(8)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47
(9) 철회·폐업 신고서	57
(10)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전기료 감면사항	58
(11)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예시)	59
2.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령	62
3. 기부식품제공 사업장 주소록	94

— 일 / 러 / 두 / 기 —

- ◆ 이 안내서에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을 의미합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주요 변경 내용 (신·구 비교표)

* 경미한 문구 수정은 신·구 비교표에 별도 표시하지 않고, 「2016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본문에 밑줄 표시

분야	쪽	2015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2016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개정사유																														
I. 개 요																																		
1. 목적 및 연혁	3	나. 연혁	나. 연혁 '16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2쪽 참고	현행화																														
2. 사업추진 체계	4		'16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3쪽 참고	현행화																														
4. 주요 현황	7	가. 운영형태별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계</th> <th rowspan="2">전국 푸드뱅크</th> <th rowspan="2">광역 푸드뱅크</th> <th colspan="2">기 초</th> </tr> <tr> <th>푸드뱅크</th> <th>푸드마켓</th> </tr> </thead> <tbody> <tr> <td>개소</td> <td>435</td> <td>1</td> <td>17</td> <td>291</td> <td>126</td> </tr> </tbody> </table> 나. 지역별(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 제외) 다. 운영주체별(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 제외)	구분	계	전국 푸드뱅크	광역 푸드뱅크	기 초		푸드뱅크	푸드마켓	개소	435	1	17	291	126	가. 운영형태별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계</th> <th rowspan="2">전국 푸드뱅크</th> <th rowspan="2">중앙 물류센터</th> <th rowspan="2">광역 푸드뱅크</th> <th colspan="2">기 초</th> </tr> <tr> <th>푸드뱅크</th> <th>푸드마켓</th> </tr> </thead> <tbody> <tr> <td>개소</td> <td>437</td> <td>1</td> <td>1</td> <td>17</td> <td>291</td> <td>127</td> </tr> </tbody> </table> 나. 지역별(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 제외) '16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7쪽 참고 다. 운영주체별(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 제외) '16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7쪽 참고	구분	계	전국 푸드뱅크	중앙 물류센터	광역 푸드뱅크	기 초		푸드뱅크	푸드마켓	개소	437	1	1	17	291	127	현행화
구분	계	전국 푸드뱅크					광역 푸드뱅크	기 초																										
			푸드뱅크	푸드마켓																														
개소	435	1	17	291	126																													
구분	계	전국 푸드뱅크	중앙 물류센터	광역 푸드뱅크	기 초																													
					푸드뱅크	푸드마켓																												
개소	437	1	1	17	291	127																												
II. 기부식품제공사업 관리																																		
1. 기부식품 제공사업 신고제도	13	라. 신고절차 <p>① (생략) *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경비(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기부식품의 포장비용)를 초과할 수 없음</p> <p>②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p> <p>※ [붙임3] : 사업자 신고증(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운영형태(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 푸드마켓의 경우 전용면적 유무, 장애인 편의 시설 등을 고려 ※ 사업자가 보유한 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 되는지 확인·점검</p>	라. 신고절차 <p>① (현행과 같음) * <u>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u>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경비(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기부식품의 포장비용)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p> <p>②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를 확인하고, <u>시행령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u> 확인한 후, 신고필증(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p> <p>※ [붙임3] : 사업자 신고증(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운영형태(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 푸드마켓의 경우 적정 전용면적 확보 여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고려 ※ 사업자가 보유한 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 되는지 확인·점검</p>	내용 보완																														
2. 기부식품 이용자 관리	15	나. 이용자 선정 : 개인이용자 우선 지원 <p>○ 개인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이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 - 이용대상자에게 기부식품 제공사업 신청서를 받아 보관</p> <p>※ [붙임 4] : 기부식품 제공사업 이용신청서</p>	나. 이용자 선정 : 개인이용자 우선 지원 <p>○ <u>'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u>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 여유가 있는 경우 <u>시설 및 단체를 지원</u></p> <p>*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라 함은 ①기금 지원대상자, ②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p>	이용자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표현																														

분야	쪽	2015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2016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개정사유
		<p>○ 개인이용자 중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를 우선적으로 지원</p> <p>-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구성원수, 경제활동, 학비 등을 감안하여 상담을 통하여 기부식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인이용자의 50% 범위 내에서 제공</p> <p>※ 이용자 선정시 기부식품 지원 필요성 여부를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과 협의하되, 지자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저소득층 등)가 있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사업자에게 명단 제공 가능</p> <p>○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받는 노인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 금지</p> <p>- 다만, 기부자가 배분대상을 지정하는 지정 기부시, 급히 배분해야 할 대규모의 신선식품 기부시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하며,</p> <p>- 지자체의 확인을 통하여 정부지원이 미흡하고, 식품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에는 제공 가능 < 신설></p> <p>○ 운영주체의 바자회·행사 등 개최, 종교·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기부식품 제공을 금지</p>	<p>③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말함(각종 조사결과 반영, 상담 실시 등)</p> <p>- 이용대상자에게 기부식품 제공사업 신청서를 받아 보관</p> <p>※ [붙임 4] : 기부식품 제공사업 이용신청서</p> <p>- 다만 개인 이용자의 50%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에게 제공 가능(가족구성원수·경제활동·학비 등 감안, 상담 실시)</p> <p>※ 이용자 선정시 기부식품 지원 필요성 여부를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과 협의하되, 지자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저소득층 등)가 있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사업자에게 명단 제공 가능</p> <p>○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u>이용자로부터 비용·실비 등을 받는 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 금지</u></p> <p>- 다만, 기부자가 배분대상을 지정하는 지정 기부시 또는 급히 배분해야 할 대규모의 신선식품 기부시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p> <p>- 지자체의 확인을 통하여 정부지원이 미흡하고, 식품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에는 제공 가능</p> <p>※ 시설·단체에 기부식품을 제공해야 하는 <u>불가피한 경우에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시설·단체에 균형있게 배분</u></p> <p>○ 사업장(푸드뱅크·마켓)의 운영주체가 개최하는 바자회·행사, 정치·종교적 목적을 위한 행사 등에는 기부식품 제공 금지</p>	
	16	<p>다. 이용자 변경 : 기부식품 제공 기간 설정·운영</p> <p>○ 이용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6개월, 9개월, 1년 단위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기부식품을 제공. 다만 상담을 통하여 기부식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p> <p>- 시설·단체에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1년 단위로 교체하며, 개인이용자로의 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p> <p>○ 제공기간 설정 기준</p> <p>(1) 1순위(1년) : 긴급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p> <p>(2) 2순위(9개월) : 차상위계층</p> <p>(3) 3순위(6개월) : 기부식품 제공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p>	<p>다. 기부식품 제공 기간 설정·운영 및 이용자 변경</p> <p>○ 지역내 상황과 이용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로(6개월, 9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기부식품을 제공. 다만 상담을 통하여 기부식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p> <p>- 시설·단체에 불가피하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 단위로 교체하며, 개인이용자로의 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p> <p>○ 제공기간 설정 기준</p> <p>(1) 1순위(1년) : 긴급지원대상자</p> <p>(2) 2순위(9개월)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p> <p>(3) 3순위(6개월)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p>	<p>지역내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음을 추가하고, 제공기간 설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표현</p>

분야	쪽	2015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2016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개정사유																								
	17	<p>나. 영수증 발급</p> <p>① 기부식품 영수증 발급(음·식료품 제조업 등 기업·개인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는 음·식료품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식품을 기부하였을 경우에 한해 기부식품 영수증 발급 ※ [붙임 5] : 기부식품 영수증(예시) - 기부식품 제공사업자가 기부자에게 발급하는 기부식품 영수증은 법인세(소득세) 산출시 전액 손비처리(필요경비) 가능 - 기부식품 영수증의 단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부자의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기부물품 제조에 사용된 비용)으로 가능 <p>[참고 : '기부식품 영수증' 법적 근거 (생략)]</p>	<p>나. 영수증 발급</p> <p>① 기부식품 영수증 발급(음·식료품 제조업 등 기업·개인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는 음·식료품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식품을 기부하였을 경우에 한해 <u>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으로 출력된 기부식품 영수증(붙임5) 발급</u> - 기부식품 제공사업자가 기부자에게 발급하는 기부식품 영수증은 법인세(소득세) 산출시 전액 손비(필요경비) 처리 가능 - 기부식품 영수증의 단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부자의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기부물품 제조에 사용된 비용)으로 가능 <p>[참고 : '기부식품 영수증' 법적 근거 (현행과 같음)]</p>	<p>문구 정리</p>																								
3.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	18	<p><참고> 영수증 발급 종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기부유형</td> <td style="width: 25%;">음·식료품</td> <td style="width: 25%;">후원금 (현금)</td> </tr> <tr> <td>기부자</td> <td>음·식료품 제조업 등 기업·개인</td> <td>기부식품 영수증</td> <td>기부금 영수증</td> </tr> <tr> <td>기타 기업·개인</td> <td colspan="3">기부금 영수증</td> </tr> </table> <p>※ 운영 주체가「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기부금단체인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p>		기부유형	음·식료품	후원금 (현금)	기부자	음·식료품 제조업 등 기업·개인	기부식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기타 기업·개인	기부금 영수증			<p><참고> 영수증 발급 종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기부유형</td> <td style="width: 25%;">음·식료품</td> <td style="width: 25%;">후원금 (현금)</td> </tr> <tr> <td>기부자</td> <td>음·식료품 제조업 등 기업·개인</td> <td>기부식품 영수증</td> <td>기부금 영수증</td> </tr> <tr> <td>기타 기업·개인</td> <td colspan="3">기부금 영수증</td> </tr> </table> <p>※ <u>사업장(푸드뱅크·마켓)의 운영 주체가「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기부금 단체인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u></p>		기부유형	음·식료품	후원금 (현금)	기부자	음·식료품 제조업 등 기업·개인	기부식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기타 기업·개인	기부금 영수증			<p>운영 주체의 의미를 명확히 함</p>
		기부유형	음·식료품	후원금 (현금)																								
	기부자	음·식료품 제조업 등 기업·개인	기부식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기타 기업·개인	기부금 영수증																											
	기부유형	음·식료품	후원금 (현금)																									
기부자	음·식료품 제조업 등 기업·개인	기부식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기타 기업·개인	기부금 영수증																											
19	<p>라. 기부식품 관리시스템 (Food Management System : FMS)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MS는 식품 기부자 및 이용자 관리,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내역 관리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고,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 [붙임 10] : 기부관리시스템(FMS) 사용 매뉴얼 	<p>라. 기부물품 관리시스템 (Foodbank Management System : FMS)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기부물품 관리시스템</u>은 식품 기부자 및 이용자 관리,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내역 관리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고,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 「<u>기부물품 관리시스템</u>」매뉴얼은 시스템 내부의 전자매뉴얼 또는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 관리시스템의 명칭 변경 (기부식품 관리시스템 → 기부물품 관리시스템) • 기부물품 관리시스템 매뉴얼은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19	<p>바. 기부금(후원금 등)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법인 등) 및 사업장의 기부금(후원금)전용계좌*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개설·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 - 법인 산하의 사업장이더라도 법인의 기부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사업장 고유의 기부금 계좌를 두어야 함 * 사업장 명칭이 부기된 운영주체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로 개설하여, 계좌의 용도를 사업장 기부금 모집·사용 전용으로 지정 	<p>바. 기부금(후원금 등)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운영주체(법인 등)는 운영주체와 사업장의 기부금(후원금)전용계좌*</u>를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개설·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 - 법인 산하의 사업장이더라도 법인의 기부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사업장 고유의 기부금 계좌를 두어야 함 * (<u>전용계좌</u>)사업장 명칭이 부기된 운영주체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로 개설하여, 계좌의 용도를 사업장 기부금 모집·사용 전용으로 지정 	<p>의미 명확화</p>																									

분야	쪽	2015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2016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개정사유
4. 기부 식품의 관리	21	<p>가. 기부식품 안전성 확보(법 제5조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p><u><신 설></u></p>	<p>가. 기부식품 안전성 확보(법 제5조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사업지침과 같음) ○ (2015년 사업지침과 같음) ○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정보의 활용 - 사업자는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에서 제공하는 위해상품정보의 상세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해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한하여 처리하여야 함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위해성 여부 확인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배분과정의 바코드 입력 시 위해상품 내역이 있는 경우 차단 알림 • 위해상품 연계관리 화면의 상세내역을 확인 후 처리 * 위해상품 차단알림은 동일 바코드의 위해상품 등록내역을 식별하여 경고하는 기능으로 해당 바코드의 모든 상품이 위해 상품인 것은 아님 (즉, 생산시기와 생산처(공장) 등이 다른 경우에는 위해상품이 아님) </div>	<p>기부식품 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기능 등 추가</p> <p>*위해상품 차단판매 시스템 (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과의 연계</p>
	23	<p>나. 기부식품의 유통기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기한 관리 : 모집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준수(<참고> 표 참조) (1) 모집가능기한 :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모집할 수 있는 식품군별 유통기한 잔여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에서 이용자 취식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는지를 고려하여 기부식품을 모집하되, 모집가능기한을 준수 ※ 모집가능기한에 맞지 않은 식품기부요청이 있을 경우 등 지침을 근거로 접수를 하지 않되, 기부자에게 식품안전사고의 우려 등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기부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가공식품·장류·음료류 등은 최소 30일, 육가공류는 최소 15일, 농산물의 경우 최소 7일의 유통기한이 남았을 경우에만 접수 (2) 배분기한 :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식품군별 유통기한 잔여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가능기한 내 식품을 모집하였다면, 배분기한을 숙지하여 이용자 취식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이용자에게 유통기한 잔여일수를 고지 - 유통기한이 적게 남아 개인 이용자에게 배분하면 기한 내에 전부 취식이 어려운 식품의 경우, 대규모 인원예 의해 단기간 소비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단체로 우선 즉시 배분 - 제빵류의 경우 식품을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즉시 취식이 가능한 시설·단체나 개인에게 즉시 배분 	<p>나. 기부식품의 유통기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기한 관리 : 모집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준수(<참고> 표 참조) (1) 모집가능 기한 :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모집할 수 있는 식품군별 유통기한 잔여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에서 이용자 취식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는지를 고려하여 기부식품을 모집하되, 모집가능기한을 준수 ※ 모집가능기한에 맞지 않은 식품기부요청이 있을 경우 등 지침을 근거로 접수를 하지 않되, 기부자에게 식품안전사고의 우려 등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기부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가공식품·장류·음료류 등은 최소 30일, 육가공류는 최소 15일, 농산물의 경우 최소 5일의 유통기한이 남았을 경우에만 접수 (2) 배분기한 :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식품군별 유통기한 잔여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가능기한 내 식품을 모집하였다면, 배분기한을 숙지하여 이용자 취식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이용자에게 유통기한 잔여일수를 고지 - 유통기한이 적게 남아 개인 이용자에게 배분하면 기한 내에 전부 취식이 어려운 식품의 경우, 대규모 인원예 의해 단기간 소비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단체로 우선 즉시 배분 - 제빵류 및 농산물의 경우 식품을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즉시 취식이 가능한 시설·단체나 개인에게 즉시 배분 	<p>농산물의 모집가능기한 확대, 햇반을 즉석밥으로 변경, 신선식품/농산물에 감치류 추가</p>

분야	쪽	2015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2016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개정사유
		<p><참고>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햇반 ○ <신설> 	<p>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석밥 • 신선식품/농산물에 김치류 추가 	
	25	<p>다. 식품사고의 예방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사고 사전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식품사고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부식품 사업자는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청에 즉시 보고 - 시·군·구 담당자는 식품사고를 조사하여 사고경위, 피해상황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우선 보고 - 시·군·구 담당자 및 사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식품사고에 대해 조치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신속히 보고 	<p>다. 식품사고의 예방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사고 사전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사업안내와 같음) ○ 식품사고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는 식품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부식품 사업자는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청에 즉시 보고 - 시·군·구 담당자는 식품사고를 조사하여 사고경위, 피해상황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우선 보고 - 시·군·구 담당자 및 사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식품사고에 대해 조치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신속히 보고 	보고 주체의 명확화
5.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인력관리 등	27	<p>나. 종사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는 기부식품 사업장 종사자가 식품 위생교육을 매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국푸드뱅크·광역 푸드뱅크 등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 식품 안전 교육기관(식품위생법상)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 - 기부식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 정보화교육 등 교육훈련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전산교육, 엑셀 및 파워포인트 교육 등 	<p>나. 종사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는 기부식품 사업장 종사자가 식품 위생교육을 매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국푸드뱅크·광역 푸드뱅크 등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 식품 안전 교육기관(식품위생법상)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 - 기부식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 정보화교육 등 교육훈련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 관리시스템(FMS) 전산교육, 개인 정보보호 교육, 엑셀 및 파워포인트 교육 등 	사업장의 종사자 교육훈련 내용 추가
8.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33	<p>마. 과태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의견청취 등의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면통지 : 해당 위반행위 조사·확인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 등을 함께 기재 (2) 의견제출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 로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3)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 	<p>마. 과태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통지·의견청취 및 부과·징수 등 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참조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내용 반영

분야	쪽	2015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2016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개정사유
		→ 이의제기시 부과권자는 자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실시 ○ 징수절차 - 과태료 징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 과태료 체납시(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징수절차 - 과태료 체납시(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III. 기 타				
	39	<붙임 2> 기부식품제공사업 계획서(예시)	<붙임 2> 기부식품제공사업 계획서(예시)	내용 구체화
	42	<붙임 4>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신청서	<붙임 4>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신청서	문구 정리
	59	<붙임 11>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예시)	<붙임 11>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예시)	내용 구체화
	-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사용 매뉴얼	<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명칭 변경 (기부식품 관리시스템 → 기부물품 관리시스템) • 시스템 내부의 매뉴얼 또는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 시스템 개편 추진에 따라, 매뉴얼 추가 업데이트 예정

I. 개요

1. 목적 및 연혁 / 3
2. 사업추진체계 / 4
3. 운영 형태 / 5
4. 주요 현황 / 7



I 개 요

1 목적 및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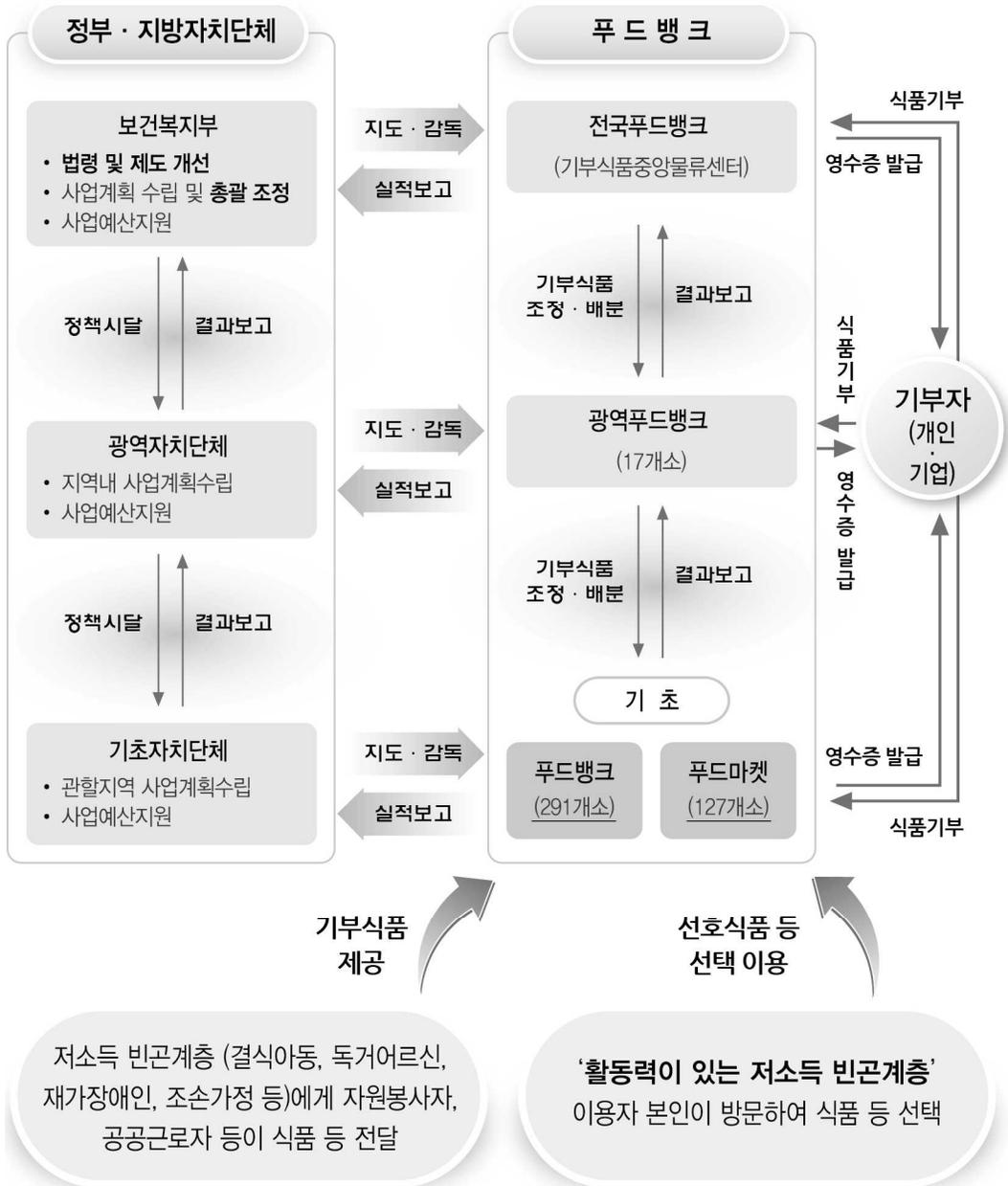
가. 목적

- 기부식품제공사업은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
-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기준 등과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

나. 연혁

- '98. 1 : 푸드뱅크 시범사업 실시(서울, 부산, 대구, 과천)
- '00. 5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전국푸드뱅크로 지정(보건복지부)
- '01. 8 :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구축·운영(www.foodbank1377.org)
- '02. 7 : 「기부식품 관리시스템(FMS)」 구축·운영
- '06. 3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06.3.24 공포, '06.9.25 시행)
- '09. 9 : 기부식품 중앙물류센터 개소(대전 유성구 대정동 302-1)
- '11. 4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11.4.28 공포·시행)
- '15.12 : 차세대 「기부식품 관리시스템(FMS)」 구축
- '15.12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437개소 운영
(전국 및 물류센터 각 1개소, 광역 17개소, 기초 418개소)

2 사업추진체계



3 운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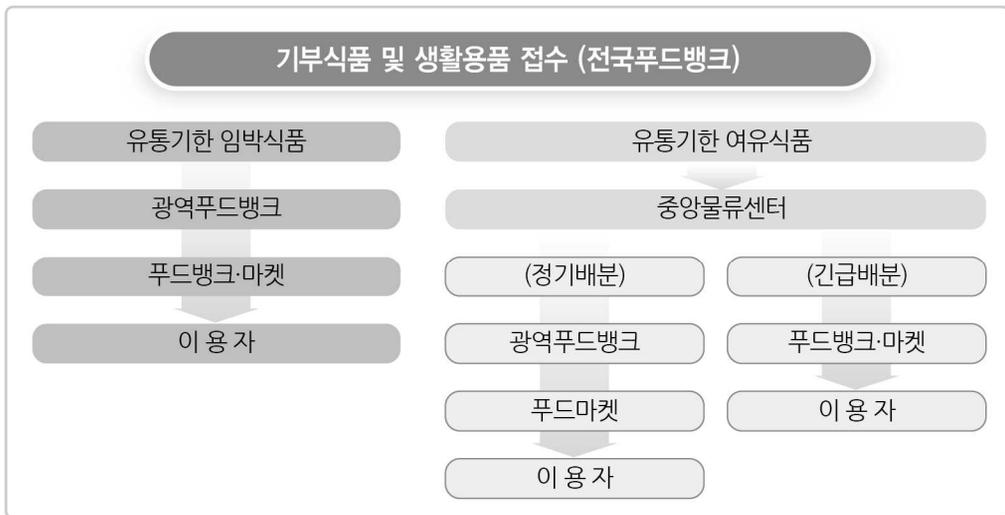
가. 전국푸드뱅크

○ 운영목적

- 식품나눔 문화 활성화, 기부식품의 전국적인 모집 및 배분, 사업프로그램의 개발 및 집행,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업무를 전담
-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00)

○ 역할

-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광역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마켓을 통하여 기부식품을 배분하고,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균형배분 실시



- 기부식품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훈련
- 중앙물류센터,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 운영
- 지역사회 식품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나눔 활성화를 위한 홍보
- 기부식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국보험 가입
- 시·도 및 시·군·구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평가

나. 광역푸드뱅크

○ 운영목적

- 광역 단위의 기부식품 모집 및 배분, 기초단위 사업장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국단위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
-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신고사업자 중에서 광역푸드뱅크를 지정 또는 위탁운영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신고 사업자를 광역푸드뱅크로 지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토록 조치

○ 역할

- 시·도 단위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운영·관리 지원
-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푸드뱅크와의 협력을 통한 기부식품 모집 및 균형배분 지원
- 시·도 단위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이용자 상담
-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관할 시·도 및 전국푸드뱅크)
- 시·군·구 단위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교육지원 및 관리

다. 기초푸드뱅크 및 기초푸드마켓

- 지역 내 식품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를 통한 기부식품 모집·관리·배분
- 지역 내 기부식품 이용자 발굴·선정
- 연도별 사업계획(후원위원회 포함), 분기별 사업실적 및 예·결산 보고
- 전국푸드뱅크 및 광역푸드뱅크와의 협력

4 주요 현황 ('15.12.31 현재)

가. 운영형태별

구분	계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	광역푸드뱅크	기 초	
					푸드뱅크	푸드마켓
개 소	437	1	1	17	291	127

나. 지역별(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 제외)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광역 푸드뱅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7
푸드뱅크	26	19	12	10	15	9	6	1	52	19	23	20	15	24	18	19	3	291
푸드마켓	33	12	7	14	3	8	2	1	17	1	5	6	5	3	4	4	2	127
계	60	32	20	25	19	18	9	3	70	21	29	27	21	28	23	24	6	435

다. 운영주체별(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 제외)

(단위 : 개소, %)

운영주체	사회복지 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자원봉사 센터	시·군·구	개인	기타 ¹⁾	계
개소	231	36	47	37	6	4	12	22	40	435
이용시설	193	34	39	27	6	4	12	22	34	371
생활시설	38	2	8	10	-	-	-	-	6	64
비율(%)	53.1	8.3	10.8	8.5	1.4	0.9	2.8	5.1	9.2	100

1) 기타 : 비영리 민간단체 등

Ⅱ. 기부식품제공사업 관리

1. 기부식품제공사업 신고제도 / 11
2. 기부식품 이용자 관리 / 15
3.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 / 17
4. 기부식품의 관리 / 21
5.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인력관리 등 / 27
6. 기부식품 사업자 신고의 철회·폐업 / 29
7.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30
8.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 32



II 기부식품제공사업 관리

1 기부식품제공사업 신고제도

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범위

-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및 제공
-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 그 밖의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나. 기부식품 사업자(법 제2조제5호, 시행령 제2조)

- ① 기부식품 사업자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 ②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고,
- ③ 매주 3회 이상, 매주 60인 이상을 대상으로 기부식품을 제공해야 함
 - ※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20 미만은 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의 목적사업인 재가 복지사업에 제공할 수 있으나, 기존 국비(지방비) 지원 이외에 사업(대상자) 추가 확대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

참고 : 법적 정의(법 제2조)

1.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기부식품”이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제공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 신고의 종류 및 요건

- ① 임의신고(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
 - 신고대상 :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아래의 임의신고 요건을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할 수 있음

- 임의신고 요건 : 보관창고, 운반차량(냉장·냉동 적재고, 온도계), 냉장·냉동시설 보유

[임의 신고] 시설과 설비의 기준

1. 보관창고

- 가. 기부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
- 나. 보관창고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창고를 분리하거나 구획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운반차량

- 가.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나.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식품의 보존 및 보관 기준에 맞는 온도(이하 “적정온도”라 한다)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당연신고(법 제3조제2항,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2)

- 신고대상 :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식품에 한함)인 사업자는 당연신고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의무 부과)
 - 당연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실시
 - ※ 임의신고 사업자가 전년도 기부식품 장부가액 3억원 이상을 제공한 경우 당연신고로의 변경이 필요하며, 당연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고요건
 - (1) 시설·설비 기준 : 16.5제곱미터 이상의 보관창고, 운반차량(냉장·냉동 적재고, 온도계), 1,000리터 이상의 냉장·냉동시설 보유
 - (2) 인력기준 :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

[당연신고 사업자]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1. 보관창고

기부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설비

가. 운반차량

-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인력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라. 신고절차

①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신고종류(임의신고, 당연신고)에 따른 신고요건을 갖춘 후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아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모두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붙임 1] : 사업자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 사업장의 운영주체 변경시에는 사업자 신고절차에 준하여 신고

- 사업계획서[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포함]

*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경비(기부식품의 차량 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기부식품의 포장비용)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 [붙임 2] : 기부식품제공 사업계획서(예시)

②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를 확인하고, 시행령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신고필증(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 ※ [붙임 3] : 사업자 신고증(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운영형태(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 ※ 푸드마켓의 경우 적정 전용면적 확보 여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고려
 - ※ 사업자가 보유한 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점검

마. 추가 조치사항

- 사업자신고를 수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규 사업자 신고사실(사업장 명칭, 대표 성명, 소재지 등)을 관할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신속히 보고하고, 신규 사업자는 동 사실을 해당 지역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전국푸드뱅크에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임의신고사업자의 전년도 기부식품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당연신고 사업자로 신고하도록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신고를 수리한 후 해당 사업자는 동 사항을 해당 지역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신속히 전국푸드뱅크에 보고
 - *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연신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사업자 신고증(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새로 교부(신고의 종류 : 임의→당연)하되, 사업자 신고증 뒷면에 최초 사업자 신고일 및 변경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
- 신고한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 및 사업장 명칭이 표기된 현판을 설치하여 푸드뱅크(마켓)임을 명시

2 기부식품 이용자 관리

가. 이용자 발굴

- 지역 내 결식문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파악하여 이용자 적극 발굴
- 지방자치단체 희망복지지원단,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기타 민간복지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

나. 이용자 선정 : 개인이용자 우선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
 -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라 함은 ①긴급지원대상자, ②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③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말함(각종 조사결과 반영, 상담 실시 등)
 - 이용대상자에게 기부식품 제공사업 신청서를 받아 보관
 - ※ [붙임 4] : 기부식품 제공사업 이용신청서
 - 다만 개인 이용자의 50%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에게 제공 가능(가족구성원수경제활동·학비 등 감안, 상담 실시)
 - ※ 이용자 선정시 기부식품 지원 필요성 여부를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과 협의하되, 지자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저소득층 등)가 있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사업자에게 명단 제공 가능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부터 비용·실비 등을 받는 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 금지
 - 다만, 기부자가 배분대상을 지정하는 지정기부시 또는 급히 배분해야 할 대규모의 신선식품 기부시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
 - 지자체의 확인을 통하여 정부지원이 미흡하고, 식품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에는 제공 가능
 - ※ 시설·단체에 기부식품을 제공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시설·단체에 균형있게 배분

- 사업장(푸드뱅크·마켓)의 운영주체가 개최하는 바자회·행사, 정치·종교적 목적을 위한 행사 등에는 기부식품 제공 금지

다. 기부식품 제공 기간 설정·운영 및 이용자 변경

- 지역내 상황과 이용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9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기부식품을 제공. 다만 상담을 통하여 기부식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
 - 시설·단체에 불가피하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 단위로 교체하며, 개인이용자로의 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
- 제공기간 설정 기준
 - 1순위(1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9개월)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 3순위(6개월)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라. 기부식품 이용자 보호(법 제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 푸드뱅크(마켓)* 관련 기부식품 취식 및 생필품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전국푸드뱅크(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사업자별 손해보험 가입 불필요)
 -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기부식품제공 사업자에 한함
 - ※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http://www.foodbank1377.org> 공지사항 참조

3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

가. 기부식품 및 기부금품(후원금, 생활용품 등) 모집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식품 제조기업, 유통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국민 등의 기부 동참 유도
- 기부모집 목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모집활동 수행
- 식품기부처에 대한 관리를 통한 지속적 기부 유도

나. 영수증 발급

- ① 기부식품 영수증 발급(음·식료품 제조업 등 기업·개인의 경우)
 -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는 음·식료품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식품을 기부하였을 경우에 한해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으로 출력된 기부식품 영수증(붙임5) 발급
 - 기부식품 제공사업자가 기부자에게 발급하는 기부식품 영수증은 법인세(소득세) 산출시 전액 손비(필요경비) 처리 가능
 - 기부식품 영수증의 단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부자의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기부물품 제조에 사용된 비용)으로 가능

참고 : ‘기부식품 영수증’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손비의 범위)**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35조는 지정기부금에 대한 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⑥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79조 1항은 지정기부금에 관한 사항

②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타 기업·개인의 경우)

- 음·식료품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개인이 아닌 자가 기부할 경우 또는 기부금품(후원금, 생활용품 등)을 접수하였을 경우 운영주체(법인 등)가 발급할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

※ [붙임 6] : 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63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45의2)

- 금전 이외의 물품 기부시에는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로 영수증 발급(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참고> 영수증 발급 종류

	기부유형	음·식료품	非 음·식료품	후원금(현금)
기부자				
	음·식료품 제조업 등 기업·개인	기부식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기타 기업·개인			

※ 사업장(푸드뱅크·마켓)의 운영 주체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기부금단체인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다. 기부식품 제공

- 사업자는 매주 3회 이상,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해야 함
-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 다만,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 직접경비 : 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기부식품의 포장비용
- 기부식품 제공시 기부식품의 특성(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 식품의 보관 및 취식방법, 유통기한, 판매·교환 금지 등의 내용을 안내
 - 이용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고지하고, 안전한 취식을 위한 별도의 관리를 수행
- 기부식품 제공시 이용자 가구원 수, 시설·단체 현원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가능

라.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oodbank Management System : FMS) 사용

- 기부물품 관리시스템은 식품 기부자 및 이용자 관리,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내역 관리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고,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 ※ 「기부물품 관리시스템」매뉴얼은 시스템 내부의 전자매뉴얼 또는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자는 기부식품 모집, 제공시 관련 실적을 실시간으로 기부물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 기부물품 관리시스템 입력으로 기부물품 모집 및 제공 명세서를 대체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http://www.foodbank1377.org>)에서 지역 내 사업 실적을 제공받을 수 있음
 - ※ ID, PASSWORD 별도 제공(전국푸드뱅크)

마.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확보(법 제5조제1항)

-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비치
 - ※ [붙임 7] :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기부식품 모집시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작성·보관
-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 기부식품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 기부식품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바. 기부금(후원금 등)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확보

- 운영주체(법인 등)는 운영주체와 사업장의 기부금(후원금) 전용계좌*를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개설·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
 - 법인 산하의 사업장이더라도 법인의 기부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사업장 고유의 기부금계좌를 두어야 함

* (전용계좌) 사업장 명칭이 부기된 운영주체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로 개설하여, 계좌의 용도를 사업장 기부금 모집·사용 전용으로 지정

- 운영주체(법인 등)의 대표와 사업장 대표는 기부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기부금을 기부식품 사업장 운영비, 식품 구매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함
-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내역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 작성·보관

4 기부식품 관리

가. 기부식품 안전성 확보(법 제5조제2항)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함
 -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붙임 8)을 준수
- 「식품위생법」상의 위생적인 취급 기준(식품위생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규정) 준수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며,
 -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또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함

참고 :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정보의 활용

- 사업자는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에서 제공하는 위해상품정보의 상세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해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한하여 처리하여야 함

위해성 여부 확인 방법

- 접수, 배분과정의 바코드 입력 시 위해상품 내역이 있는 경우 차단 알림
- 위해상품 연계관리 화면의 상세내역을 확인 후 처리
 - * 위해상품 차단알림은 동일 바코드의 위해상품 등록내역을 식별하여 경고하는 기능으로, 해당 바코드의 모든 상품이 위해 상품인 것은 아님 [즉, 생산시기와 생산처(공장) 등이 다른 경우에는 위해상품이 아님]

나. 기부식품의 유통기한 관리

○ 유통기한 관리 : 모집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준수(<참고> 표 참조)

- (1) **모집가능기한** :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모집할 수 있는 식품군별 유통기한 잔여일수
 - 사업장에서 이용자 취식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는지를 고려하여 기부식품을 모집하되, 모집가능기한을 준수
 - ※ 모집가능기한에 맞지 않은 식품기부요청이 있을 경우 동 지침을 근거로 접수를 하지 않되, 기부자에게 식품안전사고의 우려 등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기부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가공식품·장류·음료류 등은 최소 30일, 육가공류는 최소 15일, 농산물의 경우 최소 5일의 유통기한이 남았을 경우에만 접수
- (2) **배분기한** :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식품군별 유통기한 잔여일수
 - 모집가능기한 내 식품을 모집하였더라도, 배분기한을 숙지하여 이용자 취식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이용자에게 유통기한 잔여일수를 고지
 - 유통기한이 적게 남아 개인 이용자에게 배분하면 기한 내에 전부 취식이 어려운 식품의 경우, 대규모 인원에 의해 단기간 소비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단체로 우선 즉시 배분
 - 제빵류 및 농산물의 경우 식품을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무료급식소, 지역 아동센터 등 즉시 취식이 가능한 시설·단체나 개인에게 즉시 배분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구 분	기부 식품군	모집 가능기한	유통기한에 따른 이용자 배분기한		
			개인	사회복지 시설·단체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콜릿 등	최소 30일 이전	최소 15일 이전	최소 7일 이전
	즉석 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냉동 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장류 및 식용류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최소 30일 이전	최소 20일 이전	최소 1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름류	식용류, 참기름 등			
음료류	쥬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최소 15일 이전	최소 7일 이전	
신선 식품	육가 공류	핫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15일 이전	최소 10일 이전	최소 7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최소 5일 이전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즉시 배분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당일)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즉시 배분		

※ 개인이용자를 중심으로 배분하는 사업장이라도 배분기한 내에 개인이용자에게 배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단체로 즉시 배분하거나, 즉시 배분할 수 있는 인근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으로 이관

○ 보관중인 기부식품을 수시로 점검하여, 배분기한 내에 배분되지 않은 경우 또는 배분기한 이전이라도 관능검사 결과 식품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기부식품은 폐기 조치

다. 식품사고의 예방 및 관리

○ 식품사고 사전예방

- 시·군·구 담당 부서는 식품위생 담당부서 등과의 협조를 통해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위생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의 식품위생교육 여부 확인
 - ※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시설 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기부식품 사업자는 기부식품 제공시 이용자가 유통기한 내 식품을 취식하도록 안내하고, 이용자의 보관창고(또는 냉장고) 등을 수시점검

○ 식품사고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식품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부식품 사업자는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청에 즉시 보고
- 시·군·구 담당자는 식품사고를 조사하여 사고경위, 피해상황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우선 보고
- 시·군·구 담당자 및 사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식품사고에 대해 조치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신속히 보고

라. 민·형사상의 책임감면(법 제8조)

-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제공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 제외) 및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참고 : 위해식품 등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 내지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참고 : 형법상 형의 감경·면제 가능 조항

-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인력관리 등

가. 인력 확보

- 기부식품 사업자는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전담인력, 보조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다만, 당연신고 사업자의 경우 전담인력 1인,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함
 - ※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가급적 기부식품 사업을 전담(또는 겸직)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채용 등의 인건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감안할 것을 권고
 - ※ 보조인력의 범위 : 겸직인력, 사회복지무요원, 공공근로, 자원봉사자 등
- 지자체는 운영경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하고, 사회복지무요원·공공근로·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등을 우선 배치
 - 사회복지무요원에 대한 병무청 수요조사시 적극적으로 인력확보
- 자원봉사자 확보
 - 지역내 자원봉사자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관리
 -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대한적십자사·공동모금회 등 기타 민간기관 자원봉사단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자 확보

나. 종사자 관리

- 종사자 인건비
 - 광역푸드뱅크,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준수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도 참고
- 종사자 교육훈련
 - 사업자는 기부식품 사업장 종사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매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
 - ※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국푸드뱅크·광역푸드뱅크 등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 식품안전 교육기관(식품위생법상)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
 - 기부식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 정보화교육 등 교육훈련 권장
 - ※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 전산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엑셀 및 파워포인트 교육 등

○ 종사자 건강진단

- 기부식품을 가공·조리·저장·운반하는 종사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 ※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 대상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종사할 수 없음(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 사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종사시키지 못함(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 ※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기타 사항

-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 적용 가능
 - 복지할인 내용 : 사회복지시설(주택용 또는 일반용) 전기요금 20% 감액
 - 신청방법 : 인터넷(사이버지점 www.kepco.co.kr/cyber), 고객센터(국번없이123), 관할지사, 지점
 - 구비서류 :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서, 전기요금영수증, 사회복지관련 법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 신고증
 - ※ [붙임 10]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전기료 감면사항 안내

6 기부식품 사업자 신고의 철회·폐업

가. 철회·폐업 신고(법 제3조제3항)

-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을 신고

나. 절차

- 철회·폐업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붙임 9] : 철회(폐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구비서류(전자문서 포함)
 -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 신고필증

다. 추가 조치사항

-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의 타당성과 기부식품 사용 및 처분(이관) 여부 확인
-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운영 중인 푸드뱅크(마켓)가 사업을 철회 또는 폐업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입한 냉동탑차, 냉장고, 컴퓨터 등 운영 장비는 관할 시·군·구에서 회수한 후, 관할 지역의 신고한 사업자에게 인계하여 동 사업에 활용하도록 조치
- 철회 또는 폐업 신고를 수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철회 또는 폐업 사실(사업장 명칭, 대표 성명, 소재지 등)을 관할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신속히 보고하고, 해당 지역 광역푸드뱅크에서는 동 사실을 전국푸드뱅크에 보고

7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가. 국가 등의 지원(법 제7조)

※ [붙임 11]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예시)

- 보건복지부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전국푸드뱅크로 지정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물류센터 및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 운영
- 지자체는 기부식품제공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내 사업을 추진하고, 활성화를 위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 지방비 등을 확보하여 인건비, 운영장비, 공공요금·차량유지비 등 경비 지원
 - ※ 신고사업자에게 인건비·경비·장비 등을 지원하고, 사업실적 등 평가를 통하여 계속 또는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

나. 식품 안전을 위한 지도·감독(법 제10조)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와 같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및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
 -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기부식품 안전 취급)을 위반
 -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
 - ※ 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다. 기부식품제공사업 투명성 확보 및 식품 안전관리

- 지자체는 신고한 사업자가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비치,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 작성·보관 및 결과 공개 여부, 식품 유통기한 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기부식품 모집·제공, 사업장 운영현황 등의 정보를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을 통해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라. 기부식품제공사업 공정성 제고

- 기부식품 배분, 이용자 선정 등 사업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기부식품이 실제로 필요한 대상에게 배분되는지, 배분기준에 맞게 이용자가 선정되는지, 이용자에게 중복적으로 식품이 배분되지는 않는지, 배분금지 대상에게 기부식품이 배분되는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마. 기부식품 제공자 및 사업자 상시 관리

- 기부식품 사업자의 신고유형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설비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 전년도에 제공한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임의신고는 당연신고 전환, 미신고는 당연신고 필요
- 기부식품 제공자(미신고 사업장)의 경우에도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기부식품의 안전취급 등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기부식품 제공자에 대한 실태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

8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가. 시정명령(법 제11조제1항)

- 요건
 - 제3조제1항(임의신고) 또는 제2항(당연신고)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제공자 및 사업자가 제5조제1항(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또는 제2항(기부식품 안전 취급)의 규정을 위반한 때
- 행정처분의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절차 :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 통지를 통하여 시정명령

나. 사업 정지명령 및 사업장 폐쇄명령(법 제11조제2항)

- 요건
 -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6조제1항(기부식품 무상제공)의 규정을 위반한 때
- 행정처분의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 사업장 폐쇄시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다. 사업장 폐쇄(법 제11조제4항)

- 요건 : 사업자가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
- 행정처분의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폐쇄조치의 종류
 -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 표시물의 제거·삭제
 -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함

※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

○ 봉인 또는 게시문 해제 요건

- 봉인 또는 게시문 부착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
-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 또는 게시문 해제를 요청하는 때

라. 벌칙 및 양벌규정(법 제12조, 제13조)

- 제6조 제1항(기부식품 무상제공)을 위반하여 기부식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상제공 위반행위(제6조제1항)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칙을 과함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마. 과태료(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

○ 요건

- 제3조 제2항(당연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5조 제1항(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또는 제2항(기부식품 안전 취급)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지도·감독)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자

○ 행정처분의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전통지·의견청취 및 부과·징수 등 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참조

○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3)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 가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위반행위를 자수한 경우,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1호	100	150	300
나.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은 경우 1) 제5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거나 영수증 등을 보관·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300	300	3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300	300	300

Ⅲ. 기 타

1. 붙임자료 / 37
2.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령 / 66
3. 기부식품제공 사업장 주소록 / 94



III 기타

1 불임자료

- <붙임 1> 사업자 신고서
- <붙임 2> 기부식품제공사업 계획서(예시)
- <붙임 3> 사업자 신고증
- <붙임 4>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신청서
- <붙임 5> 기부식품 영수증(예시)
- <붙임 6> 기부금 영수증
- <붙임 7>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명세서
- <붙임 8>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 <붙임 9> 철회(폐업) 신고서
- <붙임10>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전기료 감면사항
- <붙임11>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예시)

붙임 1 사업자 신고서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법인만 해당)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사업장 명칭	신고 종류 임의[] 당연[]		
	소재지	면적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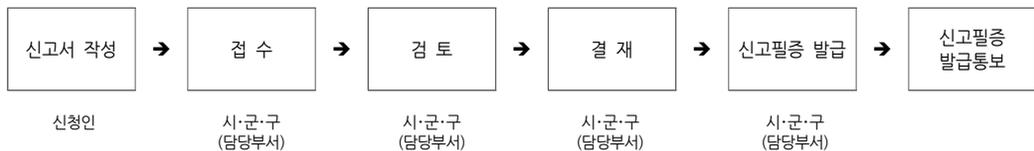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붙임 2 기부식품제공 사업계획서(예시)

사업계획서

1. 기관소개

- 설립목적
- 주요사업
- 조직체계

2. 사업의 필요성(사업의 당위성 및 운영의지 기술)

-
-

3. 설치·운영 사업계획(개조식으로 기술)

- 사업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현황(최근 3년)
- 식품·생활필수품 기부업체 및 이용자 발굴 및 관리계획
- 사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 및 상담계획
- 사업장 설치 위치(이용자 접근가능성) 및 시설·장비 현황
- 사업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단체와의 사업연계 및 구축 계획
- 사업운영 인력에 따른 업무분장 계획(담당인력 등 자원봉사자)
- 후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추진일정
- 기대효과

4. 사업예산 계획

5. 기타 사업지역 내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붙임 3 사업자 신고증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사 업 자 신 고 증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남/녀) :
주 소 :

사업자명칭 :

소 재 지 :

사업장면적 :

신고의 종류 :

조 건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붙임 4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신청서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신청서(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연 령		시 · 군 · 구	
주 소				
전 화			휴 대 폰	
팩 스			이 메 일	
이 용 자 구 분	<input type="checkbox"/> 긴급지원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부식품이 필요한 자와 인근지역 이용대상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 용 자 특 성	<input type="checkbox"/> 결식아동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정 <input type="checkbox"/> 재가어르신 <input type="checkbox"/> 재가장애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독신가정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가족관계	동거가족()명, 관계()			
주거형태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계소득	월소득() 소득내역()			
가정형편				
관련 증빙자료	※ 이용신청서 작성 시 관련 증빙서류(의료급여증 또는 긴급지원에 관한 정황 증빙 등) 첨부			
본인은 기부식품 제공사업자(푸드뱅크, 푸드마켓)로부터 제공받은 기부식품 또는 물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제공받은 기부식품을 유통기한 내 소비할 것을 서약함.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함.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기부식품 제공사업장(○○푸드뱅크/마켓) 귀하				

붙임 5 기부식품 영수증(예시)

기부식품 영수증			
No. 2012-0001			
기부식품은 어떠한 이윤을 위하여 공정, 투명하게 제공되며 활용됩니다.	기 부 금 품 : 원금 (₩)	기 부 내 역 : (수량: 개)	기 부 일 자 : 2012. 00. 00 (건수:)
* 음식료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푸드뱅크에 기증할 경우 기부식품(장부가액) 전액을법인세법시행령 제 19 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55 조에의해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 부 자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2012년 월 일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빌딩 00층	기부식품 수령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 0 0 0 (인)	
	* 전국푸드뱅크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전국푸드뱅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전화 : 2077-3985-6 팩스 : 02-713-7297

붙임 6 기부금 영수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일련번호

기부금 영수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② 기부금 단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④ 기부내용

유형	코드	구분	연월일	내용			금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기부금 수령인

작성방법

- ②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④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순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 ④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붙임 7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명세서

[별지 제4호서식]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명세서

연월일	모 집					제 공				
	기부자	품명	수량	가액	비고	이용자	품명	수량	가액	비고

- ※ 작성요령
- 기부받은(제공한)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붙임 8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I. 목 적

- 기부식품제공사업자 등을 통해 전달되는 기부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식품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식품기부자 및 이용자가 안심하고 기부식품을 이용하도록 기부식품의 위생관리 요령을 마련하고자 함

II. 기본방침

가. 모든 기부식품 대상 관능검사 실시

- 유통기한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에 대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수량이 많은 경우 표본을 추출하여 내용물을 확인·검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

나. 조리식품은 이용자 제공 전 또는 섭취 전 반드시 재가열

- 조리식품은 가열하여 활용하되 특히 여름철과 위해도가 높은 식품은 세심한 주의 요망

다. 기부식품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즉시 폐기

-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및 관능검사결과 식품의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의심될 경우, 즉시 폐기처리

라. 기부식품의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등 전문가 도움 요청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에 대하여 위생관리책임이 있으며, 동 임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책임자를 지정하고,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음
- 제공자 및 사업자 또는 담당책임자가 기탁식품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을 경우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함

마. 폐기대상 식품이 기부된 경우도 기부자에 대한 예의 준수

- 폐기대상 식품의 기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선의의 기부자가 지속적으로 식품기부에 참여하도록 예우 갖춤

Ⅲ. 기부식품 관리 3대 원칙

가. 청결의 원칙

- 1) 기부식품이 아무리 안전한 경우라도, 전달과정 및 보관 등 취급시에 청결을 등한시 하게 되면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할 수 없음
- 2) 식품위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생·청결」 은
 - 단순히 식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청결한 설비, 식품 취급자의 청결 등을 의미하며 특히, 식품취급자인 제공자 및 사업자 등 관계 종사자들의 청결상태 유지가 매우 중요함
- 3) 기부식품을 관리하여서는 안 되는 사람
 - 설사·발열 등의 증상이 있거나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질환(화농증 등) 또는 음식물을 통하여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환에 감염된 자
 - 종사자 또는 그 동거인이 법정전염병환자이거나 그 의심이 있는 자인 경우와 보균자임이 판명된 경우(단, 종사자 본인이 보균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는 제외)
 -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종사자 또는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자와 동거하거나 동일 직장에서 작업하는 종사자로서, 위장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단, 종사자 본인이 보균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는 제외)

나. 신속의 원칙

- 1) 어떤 세균도 존재하지 않는 무균상태로 만들기는 불가능하므로 식품에 부착된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기부된 식품은 배급·취식하여야 하며, 일정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식품은 해당 보관조건에 따라 냉장·냉동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함
- 2) 여름철에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준수
 - 도시락류는 7시간 경과 후부터 식중독 발생위험이 빠르게 높아지므로, 일반 도시락·햄버거류의 경우 여름철(6~9월)에 10시간, 그 밖의 계절에는 12시간이 경과하면 위험함(김밥의 유통기한은 7시간)

다. 냉장 또는 가열의 원칙

- 1) 식중독균은 그 종류에 따라 증식의 최적온도가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체온(36~37℃) 범위에서 잘 자람.
- 2) 5℃에서부터 60℃까지 광범위한 온도 범위 내에서 증식이 가능하므로 식품보관 시 이 범위를 벗어난 온도에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



IV. 일반적인 식품의 안전성 검사

가. 서류검사

- 1) 유통기한과 같이 문서나 표시 등 활자로 된 정보를 활용
- 2) 기부업체에서 발급한 기부대장에 기초하여 식용으로서의 적합여부 판단

나. 관능검사

- 1) 직접 사람의 오감을 활용하여 검사하는 것으로서 기부된 모든 식품은 동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2) 특히 쉽게 상할 우려가 있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의 경우에는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표본을 직접 시식하여 안전성 검사

3) 관능검사 기준

① 생식품류의 관능검사 기준

식품의 종류	식 별 요 령		
	양 호	보 통	불 량
가금육 (닭고기류)	탄력이 있고 살이 단단함.	-	이상한 냄새가 나고 끈적거리거나 어두운 색을 띠.
식 육	쇠고기는 선홍색을 띠고 탄력이 있음. 돼지고기는 지방의 색이 희고 탄력이 있으며, 살코기는 엷은 분홍색을 띠.	-	검은색, 초록색, 보라색 등의 얼룩이나 반점이 있음. 이상한 냄새가 나고 탄력이 없음.
어류 (냉동생선은 해동 후)	살이 단단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음	냄새가 비릿해짐.	물에 뜸.
	비늘이 피부에 잘 붙어 있으며, 어종 특유의 색깔과 싱싱한 광택을 띠.	탄력성이 조금 떨어짐.	몸체는 탄력이 없고 흐물흐물함.
	눈은 돌출하였고, 혈액의 침출이나 혼탁이 없음.	눈은 돌출하지 않고 약간 혼탁함.	눈은 들어가고 현저하게 혼탁하거나 떨어져나가고 있음.
어류 (냉동생선은 해동 후)	아가미는 선홍색임	아가미는 선명하지 못하고 소량의 점착물이 있음	아가미는 암녹색이고, 불쾌한 냄새가 남
	배 부분을 누르면 탕탕함	복부가 약간 무르기 시작함	복부는 주저앉고, 물렸음
	살색이 투명하고, 살을 빼어서 발라내기 어려움	살은 약간 불투명하고 혈관도 약간 불투명함	살은 뿌옇고 혼탁함
계 란	껍질표면이 까실까실하고, 광택이 없음	-	깨보면 난백이 퍼짐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음	-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남
	전등빛에 비추면 밝고 투명함	-	전등빛에 비추면 어둡게 보임
채소류	광택이 있고, 싱싱함	벌레가 먹거나 상처가 있어도 그 부분을 잘라내면 싱싱함.	잎이 시들고 탄력이 없음
콩나물, 숙주류	조식이 단단함.	-	수분이 너무 많고, 내용물을 눌러 보았을 때 조식이 쉽게 문드러짐.

② 건식품류의 관능검사 기준

- 건고추류는 기본적으로 기부 받지 않는 것이 좋음.
 - 가을에 수확하여 해를 넘길 경우 고추 안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푸른 곰팡이가 피어있는데 사실상 육안으로 검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런 제품은 암 발생의 원인이 됨
 - 건고추류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비해 그해 생산된 안전한 제품은 기부받기가 어려움.
- 말린 제품류(건어물류, 육포, 건과일류 등)
 - 원래의 색깔보다 진해져 탁한 색깔을 띠거나, 조직이 물러졌거나, 냄새가 심할 경우 부패되고 있는 상태임.

③ 가공식품의 관능검사 기준

- 가공식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간(제조일부터 유통기한까지)의 경과 유무 및 장단에 따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1, 2주 정도로 유통기간이 짧은 제품의 경우에는 부패의 속도가 빨라 며칠 사이에 해당 제품을 먹을 수 없게 됨.
 - 유통기간이 2, 3년씩 되는 제품의 경우(주로 캔류임)에는 수주일 또는 수개월 내에 안전성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음

다. 정밀검사 : 이·화학적 검사

- 관능검사를 통해서도 식용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기부량이 많은 경우 정밀 검사를 통해 적합판정 후 활용
- 정밀검사는 검체를 채취하여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

참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식품	
- 유제품류 - 생선가공품류 - 육가공품류	우유, 요구르트, 버터, 치즈, 우유가 들어간 음료류 등 각종 생선 캔류, 어묵류, 게맛살류 등 햄, 소시지, 족발 등
상대적으로 위해가 적은 식품	
- 탄수화물류 - 건조식품류 - 장 류	떡류, 빵류, 과자류, 사탕류 등 마른멸치, 미역, 오징어 등 고추장, 된장, 간장류
특히 주의하여야 할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식품 중 샐러드류, 달걀구이, 자른 햄과 소시지, 생선회 등은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여름철에는 이런 식품류는 배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비교적 안전한 식품류의 경우도 주의를 소홀히 하거나 다량 섭취 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 	

V. 기부식품 보관 및 운송요령

가. 식품의 보관기준

-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정온도에서 보관하여야 함.
-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관방법(실온, 냉장, 냉동 등)이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음.

식품의 종류	보존 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류가공품(밀가루·전분) • 설탕 	<p>실온</p> <p>실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육(진공포장육 제외) • 햄류 및 소시지, 분쇄가공품(가열제품) • 베이컨 • 멸균·건조식육제품, 유처리 육제품 • 기타식육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장제품 - 냉동제품 	<p>-2~0℃</p> <p>0~10℃(비가열소시지0~5℃)</p> <p>10℃ 이하</p> <p>실온</p> <p>-2~10℃</p> <p>-18℃ 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육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장제품 - 냉동제품 - 멸균·건조어육제품 	<p>0~10℃</p> <p>-15℃ 이하</p> <p>실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류(식용유 등) 	<p>실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계란 • 알가공품 (건조식품 제외) 	<p>10℃ 이하</p> <p>5℃ 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 농축유, 탈지유, 유크림류 • 연유 • 버터류·치즈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장제품 - 냉동제품 	<p>0~10℃</p> <p>실온</p> <p>0~10℃</p> <p>-18℃ 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과일·채소류 	<p>10℃ 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어패류 	<p>5℃ 이하</p>

식품의 종류	식 별 요 령
진공 포장된 제품 (햄, 소시지, 국수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지와 내용물이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어야 하는 제품이 포장과 내용물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는 포장상태가 불량하거나, 이미 이물질이 발생하여 포장상태가 변화한 것으로 유통기한 이전 제품이라도 부패하였을 가능성이 큼.
콩제품 (두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면에 점액이 있고 겉면이 분홍빛을 띰. 특히, 부패도가 높을수록 악취가 심함.
포장된 국수류 (냉면, 쫄면, 가는 국수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물에 곰팡이가 피거나 내용물간에 흰 실 같은 이물질이 있으면 상한 상태임.
음료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펫트병에 들어있는 경우 흔들어 햇빛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아야 함. 단, 제조상 자체 액기스(내용물)가 들어있는 종류는 다름. (오렌지 주스, 파인애플, 토마토 주스 등 주로 펫트병 제품보다 고가격 제품들임)
캔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풀어 있거나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 경우에는 유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찌그러진 부분으로 공기 등 이물질 유입 가능 - 특히, 육류제품의 경우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치명적인 물질이 존재할 우려가 높음.
우유, 요구르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면 시큼한 냄새가 남.
수산가공품류 (어묵류, 게맛살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물이 서로 엉겨서 덩어리져 있는 것은 상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조리해서 먹어야 함.
초콜렛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래의 갈색에서 색이 흐려져 있고, 색이 고르지 않으며 부분부분 흰 빛갈의 다른 느낌을 주며, 대체로 원래보다 심하게 건조되어 있음.
어묵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지와 내용물간에 가는 실 같은 이물질이 발생되어 있고, 미끈 미끈한 점액이 생겨있음.
유당처리제품 (도우넛, 튀김만두, 튀긴 과자류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름에 튀긴 가공품류의 색이 너무 진한 갈색을 띠는 것은 산화·부패된 기름에 튀긴 것으로 식중독 및 노화의 원인이 됨
냉동가공품 (돈가스, 만두류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물이 서로 엉겨있는 것은 해동과 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제품의 안전성이 저하된 것임
탄수화물가공제품 (빵류, 떡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의 한부분에 곰팡이가 핀 경우에 전량 폐기토록 함. 이미 제품 전체에 곰팡이 포자가 퍼져있는 상태이므로 곰팡이만 떼어내고 먹는 것은 위험함.

나. 기부식품의 운송·보관요령

1) 일반원칙

- 냉동·냉장 유통 또는 보관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에는 적정설비를 갖춘 운반차량 혹은 용기를 이용하여 운송 또는 보관하도록 함.
- 운반과정 중 용기가 파손되거나 먼지 또는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
- 재가열이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에 식품의 중심부 온도가 적어도 75℃이상에 이르도록 가열하여야 함.
- 재가열된 식품은 더운 상태(60℃이상)에서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소비되지 않은 식품은 폐기처분하여야 함.
- 검수가 끝난 식품은 바닥에서 20cm이상의 높이에 두어야 하는데 이는 보관창고의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와 기탁식품을 상하게 하기 때문임.

2) 냉장·냉동고의 관리

-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채소류를 보관하는 장소는 10℃전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나
 - 문의 개폐를 고려하여 냉동고는 -20℃이하, 냉장고는 5℃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온도는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 자동기록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냉장·냉동고는 용량의 70%이하로 보관하고, 문의 개폐는 신속하고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
- 냉장·냉동고는 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 식품으로부터 유출된 침출액 등에 의해 더러워진 경우에는 그때마다 청소를 하여야 함.
- 시설의 청소는 모든 식품을 작업장내에서 완전히 반출하거나 청소에 따른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실시하여야 함.
- 리스테리아 등 병원성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바닥 및 기구류 등은 가능한 건조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3) 냉동·냉장차의 관리

- 관리는 냉장고의 원칙에 준하여 실시함
- 청소는 배송 후 냉동·냉장 작동장치를 끈 후에 내부청소를 바로 하고, 내부 환기를 시켜 차 내부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 배송 시 식품 침출액이 배출되었을 경우 소독 청소를 하도록 함.

VI. 행정사항

- 가. 식품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 등은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하고,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나. 전국 및 광역푸드뱅크는 기부식품의 위생적인 모집·관리 및 제공을 위해 관능 검사기법 등을 수집·연구 및 보급 강구

붙임 9 철회·폐업 신고서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2.12.>

철회·폐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	명칭		소재지
	철회(폐업)일		철회(폐업)사유
	신고증 분실사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사업)를 철회(폐업)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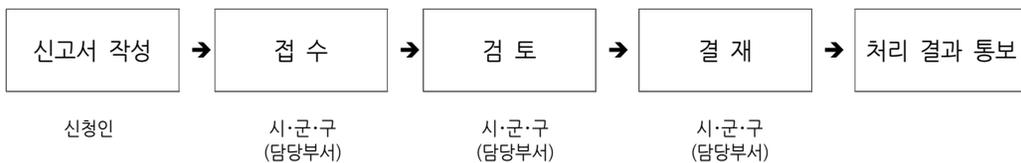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2. 신고필증 ※ 사업자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붙임 10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전기료 감면사항



135-791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http://www.kepco.co.kr FAX 02-3456-4598
 영업처 영업운영팀 차장 강미숙 ☎ 021-3456-4571 beam@kepco.co.kr

문서번호 영업(운)82102-5405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수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참조 복지자원운영실장

시행일 2009. 9.24.

121-805

제목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복지할인 적용 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공문 푸드뱅크운영과305-778(2009.08.18)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 적용이 가능하므로**,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당사 예하사업소에 상기 내용을 공문으로 시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할인 신청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①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서
- ② 전기요금영수증
- ③ 사회복지관련 법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신고증**. 끝.

결	담당	과장	부장	실장	사무총장	의장
재	승인	이민	연필	/	/	김민



한국전력공사사장



붙임 11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예시)

□ 목 적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기부식품제공 사업장 실태를 점검

□ 기본사항

푸드뱅크(마켓)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FAX	담당자(H·P)
사업장 신고 구분(임의, 당연)		신고일자/변경사항	비 고	

□ 신고유형에 따른 사업장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점검

- 임의신고 사업장

순번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1	보관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보관창고는 시건장치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구조이어야 함 • 보관창고는 주위의 위생상태가 청결한 장소이어야 함 • 식품창고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업무용 도로만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 또는 타 사업에 필요한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겸용으로 판단함 • 보관창고를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외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될 경우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구획분리를 위한 고정된 벽체, 별도의 출입구 등을 설치하여야 함 	
2	운반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1대이상 갖추어야 하고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가 설치되어야 함 • 운반차량의 냉장·냉동고의 경우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명의를 자동차 등록증 확인 	
3	냉장(냉동)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 모델명·규격 등의 사양이 표기된 구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양도증명서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당연신고 사업장

순번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1	보관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보관창고를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외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될 경우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구획분리를 위한 고정된 벽체, 별도의 출입구 등을 설치하여야 함 보관창고를 소유한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를 확인 	
2	운반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1대이상 갖추어야 하고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가 설치되어야 함 운반차량의 냉장·냉동고의 경우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명의의 자동차 등록증 확인 	
3	냉장 (냉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함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모델명, 규격 등의 사양이 표기된 구매확인서, 양도증명서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의 소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 	
4	인력 (전담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전담직원이란 예산 항목 상에 푸드뱅크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확보되어 있고, 업무분장표에 푸드뱅크업무 만 명시되어 있는 직원을 의미함 업무분장표, 인건비 지급명세서, 직원 인터뷰등의 서류를 확인 	
5	인력 (보조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함 보조인력에는 사회복지요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 자원봉사자 등 푸드뱅크 업무를 담당하는 추가인력 모두 포함됨 사회복지요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는 지자체 및 지역 자활센터 등 관리주체의 공문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내부공문에 의한 배치계획 등에 기부식품제공사업 보조업무가 명시되었는지 여부 자원봉사자는 평균 주 10시간이상 전담 및 담당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및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 포털과 같이 봉사 인증 필수) 	

□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할 것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 영수증, 인수증 등의 증빙서류 비치 작성 및 보관 - 행정관리문서로 기부식품 접수문서대장, 기부식품 배분문서내역, 기부자 관리내역, 이용자 관리내역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제시된 항목을 모두 포함 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모집일자 • 동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안전한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이수 여부 • 2016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 8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 식품안전사고 발생 여부 및 사고 발생 시 대책과 비상연락처 비치 등 안전계획 수립 여부 등 확인 	

□ 기부식품의 무상제공 및 사업장 신고 변경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무상 제공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사항으로 기부식품의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함 •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 직접모집경비를 초과할 수 없음(직접모집 경비 한도는 실제 운송회사에 지출된 물품운반비용기준이며, 해당 물품의 장부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사업장 변경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신고 사업장에서 전년도 기부식품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신고사업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2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령 : 3단 비교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사업자)	
제3조(신고)	제3조(사업자 신고) 제4조(신고의 기준)	제2조(사업자 신고 등) 제3조(철회·폐업신고 등)
제4조(기부식품제공사업)		
제5조(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제5조(기부식품 모집, 제공과정의 투명성 등)	제4조(장부의 비치)
제6조(기부식품의 무상제공)	제6조(직접 경비의 범위 등)	
제7조(국가 등의 지원)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감면)		
제9조(이용자 보호)		
제10조(지도·감독 등)		
제11조(시정명령 등)		제5조(시정명령) 제6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벌칙)		
제13조(양벌규정)		
제14조(과태료)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	부칙	부칙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6호, 2011.4.28., 일부개정]</p> <p>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공체문회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이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4호, 2014.12.9., 일부개정]</p> <p>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업자)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할 것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6호, 2011.4.28., 일부개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4호, 2014.12.9., 일부개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p>
<p>제3조(신고) ①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조(사업자 신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p> <p>제4조(신고의 기준)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1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2008.2.29, 2010.3.15></p>	<p>제2조(사업자 신고 등) 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개정 2010.9.1., 2014.12.12.></p> <p>1. 삭제 <2014.12.12.></p> <p>2. 사업계획서[영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6호, 2011.4.28., 일부개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4호, 2014.12.9., 일부개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p>
<p>3. 삭제 <2014.12.12.></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4.12.12.></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영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3조(철회·폐업신고 등)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회·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삭제 <2014.12.12.></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6호, 2011.4.28., 일부개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4호, 2014.12.9., 일부개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p>
<p>제4조(기부식품제공사업) 기부식품제공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및 제공 2.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3. 신고필증
<p>제5조(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① 제4조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조(기부식품 모집, 제공과정의 투명성 등) ① 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제4조(장부의 비치) 사업자가 영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6호, 2011.4.28., 일부개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4호, 2014.12.9., 일부개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p>
<p>제6조(기부식품의 무상제공) 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집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단서의 직접 경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3. 기부식품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4. 기부식품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p> <p>제6조(직접 경비의 범위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접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2. 기부식품의 포장비용</p>	
<p>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 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p>	<p>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6호, 2011.4.28., 일부개정]</p> <p>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식품 중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4호, 2014.12.9., 일부개정]</p> <p>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p>
	<p>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무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6호, 2011.4.28., 일부개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4호, 2014.12.9., 일부개정]</p> <p>3. 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기부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4. 제7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제공 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무 ②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기부식품 모집 과 제공에 관한 정보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중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4.8.6.>]</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p>
	<p>제7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 관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본조신설 2013.12.30.] [제7조의2에서 이동 <2014.8.6.>]</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6호, 2011.4.28., 일부개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4호, 2014.12.9., 일부개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p>
<p>제8조(민·형사상의 책임감면) ①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중인 경우 <p>②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 내지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p> <p>제9조(이용자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6호, 2011.4.28., 일부개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4호, 2014.12.9., 일부개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p>
<p>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10조(지도·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6호, 2011.4.28., 일부개정]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4호, 2014.12.9., 일부개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p>
<p>제11조(시정명령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p>제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6호, 2011.4.28., 일부개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4호, 2014.12.9., 일부개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p>
<p>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2 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 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표시 물의 제거·삭제 2.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 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 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사업 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6호, 2011.4.28., 일부개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4호, 2014.12.9., 일부개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p>
<p>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게시 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쳐야 한다.</p> <p>⑧ 제4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p> <p>제12조(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식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6호, 2011.4.28., 일부개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4호, 2014.12.9., 일부개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p>
<p>제13조(양벌규정) 범인의 대표자나 범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범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범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범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28.]</p>	<p>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p>	<p>1. 제2조에 따른 사업자의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사업자의 신고 철회·폐업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의 서식: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5.]</p>
<p>제1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p>	<p>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6호, 2011.4.28., 일부개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4호, 2014.12.9., 일부개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p>
<p>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p>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4.12.9.]</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6호, 2011.4.28., 일부개정]</p> <p>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4호, 2014.12.9., 일부개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법률 제7918호, 2006.3.24.></p> <p>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대통령령 제19690호, 2006.9.22.></p> <p>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보건복지부령 제369호, 2006.9.25.></p> <p>이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6호, 2011.4.28., 일부개정] 한다. 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정부조직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4호, 2014.12.9., 일부개정] 까지 생략 <3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80>까지 생략</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94>까지 생략</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0>까지 생략 <4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6호, 2011.4.28., 일부개정]</p> <p>로 한다. <47>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4호, 2014.12.9., 일부개정]</p> <p>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로 한다. <97>부터 <187>까지 생략</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p> <p>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84>까지 생략</p>
<p>부칙 <법률 제9932호, 2010.1.18.>(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p>	<p>부칙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p>	<p>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9.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2>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p>	<p>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p>	<p>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2014.8.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6호, 2011.4.28., 일부개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4호, 2014.12.9., 일부개정]</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p>
<p>부칙 <법률 제10606호, 2011.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p>
	<p>부칙 <대통령령 제25834호, 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시설 및 설비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당연신고사업자의시설·설비및인력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3.3.23>

시설 및 설비의 기준(제4조제1항관련)

1. 보관창고

- 가. 기부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
- 나. 보관창고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창고를 분리하거나 구획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운반차량

- 가.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나.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식품의 보존 및 보관 기준에 맞는 온도(이하 “적정온도”라 한다)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제4조제2항관련)

1. 보관창고

기부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설비

가. 운반차량

-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인력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4.1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를 자수한 경우
 - 3)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1호	100	150	300
나.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1) 제5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거나 영수증 등을 보관·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300	300	3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300	300	300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자신고증

[별지 제3호서식] 철회·폐업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기부식품모집 및 제공명세서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2.12.>

사업자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법인만 해당)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사업장 명칭		신고 종류 임의[] 당연[]	
	소재지		면적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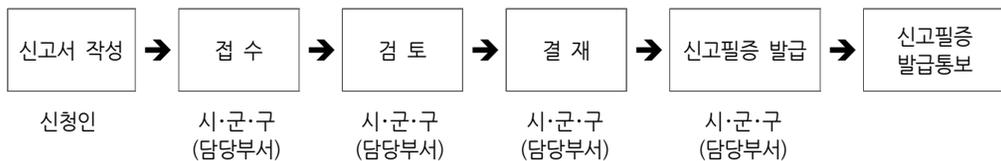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사업자 신고증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남/녀) :

주 소 :

사업자명칭 :

소재지 :

사업장면적 :

신고의 종류 :

조건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내용		
일자	내용	담당자 직·성명 (서명 또는 인)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2.12.>

철회·폐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	명칭		소재지
	철회(폐업)일		철회(폐업)사유
	신고증 분실사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사업)를 철회(폐업)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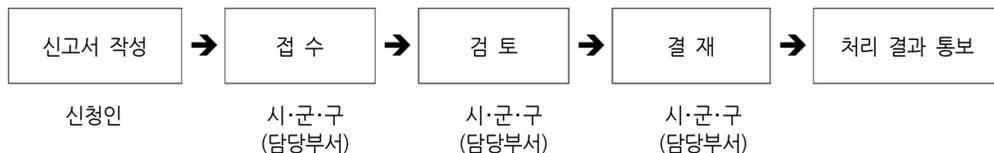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2. 신고필증 ※ 사업자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명세서

연월일	모집					제공				
	기부자	품명	수량	가액	비고	이용자	품명	수량	가액	비고

- ※ 작성요령
- 기부받은(제공한)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3 기부식품제공 사업장(푸드뱅크, 푸드마켓) 주소록

푸드뱅크

(2015.12월 말 기준)

구 분	사업장 명칭	소 재 지	일반전화	
전국	푸드뱅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02)2077-3983~6	
	중앙물류센터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302-1 기부식품제공 중앙물류센터	042)546-1556~7	
서울 (26개소)	광역 물류센터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도봉구 마들로 13길 70 905-1338	
	강남구	강남구푸드뱅크	강남구 개포로 605 강남장애인복지관 지하1층	3412-1377
	강동구	강동구푸드뱅크	강동구 동남로926	471-1377
	강북구	강북구푸드뱅크	강북구 삼각산로 119	991-1377
	강서구	강서구푸드뱅크	강서구 공항대로2가길 5 1층	2635-1377
	관악구	관악구푸드뱅크	관악구 신림로58길 13	872-1377
	광진구	광진구푸드뱅크	광진구 군자로 34	3436-4317
	구로구	구로구푸드뱅크	구로구 구로동로50길 10	3283-1377
	금천구	금천구푸드뱅크	금하로 29길 36	893-1377
	노원구	노원구푸드뱅크	노원구 동일로 1229 노원구민회관 지하1층	933-1377
	도봉구	도봉구푸드뱅크	도봉구 덕릉로 329	907-1377
	동대문구	동대문구푸드뱅크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9 1층	2246-0036
	동작구	동작기초푸드뱅크	동작구 사당로 215 서림빌딩 204호	817-1377
	마포구	마포행복나눔기초푸드뱅크	마포구 백범로 227	702-1377
	서대문구	서대문구푸드뱅크	서대문구 연희로 292	304-1376
	서초구	서초구푸드뱅크	서초구 바우외로43길	579-1377
	성동구	성동구푸드뱅크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8길 10 준희빌딩	425-1377
	성북구	성북구푸드뱅크	성북구 삼양로8가길 32	985-0161
		송파구푸드뱅크	송파구 마천로 51길 2	401-1377
	송파구	나눔과기쁨203지회 푸드뱅크	송파구 마천로 31길 22 원인통상(주)(마천동)	1544-9509
양천구	양천구푸드뱅크	양천구 신정중앙로 80	2651-1792	
영등포구	영등포구푸드뱅크	영등포구 도림로 61길 7	846-1377	

구 분	사업장 명칭	소 재 지	일반전화	
	용산구	용산구푸드뱅크	용산구 한강대로 345	703-0129
	은평구	은평구푸드뱅크	은평구 은평터널로 48	305-1377
	종로구	종로구푸드뱅크	종로구 지봉로 86 송인1동 주민센터 4층	762-1377
	중구	중구푸드뱅크	중구 퇴계로 460	2297-1377
	중랑구	중랑구푸드뱅크	중랑구 봉화산로 56길 22	493-1582
부산 (20개소)	광역시	부산광역시푸드뱅크	연제구 거제천로 89 이안빌딩 4층	051)714-1378
	강서구	강서구푸드뱅크	강서구 명지도 순아강변길5 (낙동복지관)	271-0560
	금정구	금정구푸드뱅크	금정구 중앙대로 2349번길 3	508-1998
		금정구사회복지동행푸드뱅크	금정구 금정로 221, 은성빌딩 4층	582-3253
	기장군	기장군푸드뱅크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284-12번지	724-3453
	남구	남구푸드뱅크	남구 동제당로 258	647-3655
	동구	동구푸드뱅크	동구 안창로 57 동구종합사회복지관	633-3367
	동래구	동래구푸드뱅크	동래구 시실로 107번길 151	531-2460
	진구	진구푸드뱅크	부산진구 당감서로 16 당감종합사회 복지관	896-2320
	북구	북구푸드뱅크	북구 덕천로 74	331-4674
	사상구	사상구푸드뱅크	사상구 가야대로 187	312-0675
	사하구	사하구푸드뱅크	사하구 다송로 59번길 두송종합사회 복지관	265-9471
	서구	서구푸드뱅크	서구 암남동 장군산로 103번길 6	241-1133
	수영구	수영구푸드뱅크	수영구 금련로 43번길 54	755-3367
	연제구	연제구푸드뱅크	연제구 마곡천로 29-8	863-8360
		영도구	영도구푸드뱅크	영도구 상리로 63-16
		러브영도푸드뱅크	영도구 절영로 121-1	418-7095
	중구	중구푸드뱅크	중구 망양로 309	464-3137
	해운대구	해운대구푸드뱅크	해운대구 재반로 12번길 16	782-5005
	대구 (14개소)	광역시	대구광역시푸드뱅크	남구 대덕로 181
달서구		상록수푸드뱅크	달서구 문화회관3길 25	716-6123
		달서구본동푸드뱅크	달서구 구마로 14남길	639-1377
		달서구성서푸드뱅크	달서구 신당로 56	583-1284
달성군		달성군푸드뱅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9	616-1376
동구		동구동촌푸드뱅크	동구 입석로 5	986-1377
		동구제일기초푸드뱅크	동구 송라로2길 17-6	755-9392

구 분		사업장 명칭	소 재 지	일반전화
	북구	동구진명푸드뱅크	동구 아양로 239	746-1377
		북구산격푸드뱅크	북구 연암로 183	381-9193
		북구선린푸드뱅크	관음동로9길 10-25	323-2297
	수성구	수성구동대구푸드뱅크	수성구 만촌로 93	753-7775
		수성구지산푸드뱅크	수성구 용학로 325	781-5156
		수성구청곡푸드뱅크	수성구 노변공원로 49-1	794-1377
중구	중구푸드뱅크	중구 남산로 1길 78	254-1388	
인천 (11개소)	광역시	인천광역시푸드뱅크	인천시 남동구 용천로 208, 503	032)891-1377
	강화군	강화군푸드뱅크	강화읍 향나무길 22번길 12	932-1378
	계양구	계양구푸드뱅크	계양구 계양산로 91	555-1377
	남구	남구푸드뱅크	남구 매소홀로 418번길 14-57	861-1377
	남동구	남동구푸드뱅크	남동구 소래로 645	469-1377
	동구	동구푸드뱅크	동구 화수로 66	763-1377
	부평구	부평구푸드뱅크	부평구 평천로 447	519-1377
	서구	서구태화푸드뱅크	서구 심곡로 124번길 10	564-1377
		서구푸드뱅크	서구 신석로 121번길 10	574-1377
	연수구	연수구푸드뱅크	연수구 원인재로 315	818-1377
	중구	중구푸드뱅크	중구 송학로 40	761-1399
광주 (16개소)	광역시	광주광역시푸드뱅크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40	062)351-2114
	광산구	광산구송광푸드뱅크	광산구 우산로 17	945-1377
		광산구만나푸드뱅크	광산구 산정로 27	941-1377
		광산구청지푸드뱅크	광산구 송도로 143 대덕1차 상가층	941-8209
	남구	남구푸드뱅크	남구 용대로 91	676-5087
		남구희망푸드뱅크	남구 진다리로 31번길 13	653-9313
	동구	동구푸드뱅크	동구 천변좌로 656	234-1377
	북구	북구푸드뱅크	북구 군왕로 207번길 6	266-1377
		북구두암푸드뱅크	북구 삼정로 7	266-8183
		북구오치푸드뱅크	북구 서하로 194번길 6	574-1377
	북구	북구사랑나눔푸드뱅크	북구 풍동길 20	512-1125
		북구섬기고나눔푸드뱅크	북구 북문대로 70	524-1377
		북구행복나눔푸드뱅크	북구 당외로 12	269-1377
	서구	서구푸드뱅크	서구 운천로 32번길 23	375-1377
		서구쌍촌푸드뱅크	서구 쌍학로 47	384-1377
		서구시영푸드뱅크	서구 화장로 87-1	371-1377

구 분	사업장 명칭	소 재 지	일반전화	
대전 (9개소)	광역	대전광역푸드뱅크 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05호)	042)525-1378	
	대덕구	대덕구푸드뱅크 대덕구 신탄진로 101	627-6800	
	동구	동구푸드뱅크	동구 동대전로 735 201호	273-1377
		동구나눔과기쁨푸드뱅크	동구 태전로 174안길 20	252-9149
	서구	서구푸드뱅크 서구 오량4길 61	585-8875	
	유성구	유성구푸드뱅크	유성구 봉산로 45	934-6338
		대전가톨릭농수산물 지원센터(푸드뱅크)	유성구 노은동로 33 농수산물도매 3문 경사로 옆	822-7986
	중구	중구푸드뱅크	중구 선화로 43번길 13	255-2278
		사랑의먹거리나눔운동 본부(푸드뱅크)	중구 문창로 39	242-2700
울산 (8개소)	광역	울산광역시푸드뱅크 울산시 중구 염포로 85 (남외동 동천체육관내)	052)285-1378	
	남구	남구푸드뱅크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30번길 17	274-1277
		남구나눔푸드뱅크	남구 봉월로 50번길 45	257-1377
	울주군	울주군푸드뱅크 울산 남구 문수로 382(옥동 156-3) 울주군청 별관5층	261-1377	
	동구	동구푸드뱅크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진성8길 91 (바드래문화관 3층)	209-3974	
	북구	북구푸드뱅크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6	241-8642
		나눔과기쁨푸드뱅크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1길 1층	289-9543
중구	중구아름다운푸드뱅크	중구 반구동 442-2번지	292-1365	
세종 (2개소)	광역	세종광역시푸드뱅크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487	044)868-1311	
	조치원읍	세종사랑푸드뱅크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5길 30	868-1311	
경기 (52개소)	광역	경기도광역푸드뱅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1 89-5번지 6층	070-8666-6114	
	물류센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48-1번지	031)213-8557
	가평군	가평푸드뱅크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가화로 462 3층	070-8847-2436	
	고양시	고양시흰돌푸드뱅크	일산동구 장백로 61	031)905-3400
		고양시문촌7푸드뱅크	일산서구 킨텍스로 340	916-4071
		고양시문촌9푸드뱅크	일산서구 주엽로 156 문촌마을 9단지 내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917-0202
	과천시	과천시푸드뱅크 관악산길 194	02)502-2015	
광명시	광명시푸드뱅크 소하로 88, 601호(소하동, 청학프라자)	02)805-1377		

구 분	사업장 명칭	소 재 지	일반전화
	광명푸드뱅크행복바구니	광삼로 9 1층	031)2619-1370
광주시	광주시중앙푸드뱅크	고블로 88	768-1925
	광주시참사랑푸드뱅크	역동 27-12 한솔빌딩 3층	8028-8906
구리시	구리시푸드뱅크	별말로 129번길 50	556-8100
군포시	군포시푸드뱅크	오금로 102	397-2054
김포시	김포시푸드뱅크	김포 북변중로 65번길 4-8	996-1377
남양주시	남양주시나눔푸드뱅크	경춘로 990번길 9-8	564-1377
동두천시	동두천시천사푸드뱅크	동두천시 광암로 6번길2	564-1377
부천시	부천시행복동행푸드뱅크	소사구 하우로 315-1	032)612-0124
	부천시푸드뱅크	원미구 계남로 125번길 한라마을 관리소 2층	326-1477
성남시	성남시푸드뱅크	중원구 성남대로 1151번길	031)757-1377
	성남시청솔푸드뱅크	분당구 미금로 246	714-6333
수원시	수원시장안푸드뱅크	장안구 장안로 63번길 8	271-1377
	수원시푸드뱅크	팔달구 창룡대로 210번길 13	254-1378
	수원시권선푸드뱅크	권선구 효탄로 24-17 태영아이원 102호	293-0900
시흥시	시흥시목감푸드뱅크	목감초등길 45	403-0110
	시흥시정왕푸드뱅크	봉우재로 23-26 1층	434-1379
안산시	안산시광림푸드뱅크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33	487-1377
	안산시나눔과기쁨푸드뱅크	상록구 안산대학로 36 안산신성교회 (일동)	406-7767
안성시	서안성푸드뱅크	공도읍 진사길 79-17	652-5085
	안성시동부푸드뱅크	죽산면 죽주로 292-22	070-7788-1377
	안성시푸드뱅크	중앙로 451번길 11	031)675-7676
안양시	안양시푸드뱅크	동안구 동안로 153 평생학습원 2층	386-9957
	안양유쾌한푸드뱅크	만안구 만안로 271 2층	442-8488
양주시	양주시푸드뱅크	광적면 가래비길93	837-1377
양평군	양평군푸드뱅크	양평군 용문역길67	775-7741
여주시	여주시구세군푸드뱅크	여주시 도예로 39-11	031)885-1138
	여주시푸드뱅크	여주시 세종로 319	886-9101
	여주좋은이웃푸드뱅크	가남읍 태평2길 13	884-1377
연천군	연천군푸드뱅크	전곡읍 전곡로 40번길 1	883-1010
오산시	오산시푸드뱅크	오산로 272번길 23	378-1377
용인시	용인시사랑나눔푸드뱅크	기흥구 신갈로 84번길 5-17	281-1377

구 분	사업장 명칭	소 재 지	일반전화	
		여럿이함께푸드뱅크	마북로 247번길 92	283-0870
	의왕시	의왕시푸드뱅크	효행로 46	458-3027
	의정부시	의정부시푸드뱅크	호국로 1332번길 13, 창조빌딩1층	837-6114
	이천시	이천시선양푸드뱅크	남천로 51-6	637-1377
		이천시푸드뱅크	부발읍 신원로 18 만옥빌딩 3층	634-1377
	파주시	파주시사랑나눔푸드뱅크	파주읍 봉서리 187-3	949-1377
		파주시희망푸드뱅크	교하로 914 아이리스빌딩B1F-1호	945-3054
	평택시	평택시송탄푸드뱅크	송탄로 194	662-2677
		평택시푸드뱅크	평택로 149	652-1377
	포천시	포천시푸드뱅크	중앙로 207번길 23	535-1376
	하남시	하남시푸드뱅크	역말로 71	793-6920
	화성시	동탄사랑나눔푸드뱅크	병점중앙로 10번길 10	225-2232
		화성시푸드뱅크	향남읍 행정중앙로1 30	8059-1677
	강원 (20개소)	광역	강원광역푸드뱅크	강릉시 모산로 391번길 15
강릉시		강릉시푸드뱅크	동부시장 3길 22 2층	643-1377
고성군		고성군푸드뱅크	간성읍 수성로 141	681-1377
동해시		동해시푸드뱅크	봉수로 48	535-2770
삼척시		삼척시푸드뱅크	원당로 2길 72-6	575-0516
속초시		속초시푸드뱅크	먹거리길 19	631-8761
양구군		양구군푸드뱅크	양구새싹로 7-11	482-1377
양양군		양양군푸드뱅크	양양읍 남문로 35	673-1377
영월군		영월군푸드뱅크	영월읍 덕포하리 4길 19-5	374-6411
원주시		원주영강푸드뱅크	원주시 행구로 215	734-6552
		원주시푸드뱅크	갈머리2길 31, 101호	747-1347
인제군		인제군푸드뱅크	인제읍 비봉로 44번길 100	463-1377
정선군		정선군푸드뱅크	정선읍 봉양7길 16	562-2922
춘천시		춘천시푸드뱅크	중앙로 104-1	262-3494
철원군		철원군푸드뱅크	동송읍 이평로 80-1	455-1846
태백시		태백시푸드뱅크	태백로 398-8	553-8155
평창군		평창군푸드뱅크	평창읍 중리 노성로 129	334-1377
홍천군		홍천군푸드뱅크	홍천읍 너브내길 121	070-4104-1377
화천군		화천군푸드뱅크	화천읍 상승로8길 15-23	442-1377
횡성군		횡성군푸드뱅크	횡성읍 문화체육로 70	342-1104

구 분	사업장 명칭	소 재 지	일반전화	
충북 (24개소)	광역	충북광역푸드뱅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 충북 종합사회복지센터3층	043)234-0840
	괴산군	괴산군푸드뱅크	괴산읍 괴강로 15	834-1377
		괴산나눔과기쁨푸드뱅크	괴산읍 정용1길 8	832-3197
	단양군	단양군푸드뱅크	단양읍 수변로 83	422-1700
		단양나눔과기쁨푸드뱅크	대강면 장림리 장림1길 6	070-7756-0193
	보은군	보은군기초푸드뱅크	보은읍 장신2길 11-1	544-1377
	영동군	영동군나눔푸드뱅크	영동읍 눈어치 1로 71	744-4949
	옥천군	옥천군푸드뱅크	삼양로 8길 9	733-2500
	음성군	음성군푸드뱅크	음성읍 시장로 90 음성새마을금고 4층	873-2882
		음성관성푸드뱅크	대소면 새미실길 74	070-4337-1270
		음성한울사랑나눔푸드뱅크	생곡면 음성로 1620번길 5	878-4312
	제천시	제천시푸드뱅크	송문로 7길 5	645-5004
	증평군	증평군푸드뱅크	증평군 창신로 85	836-6040
	진천군	진천푸드뱅크	진천읍 상산로 42	533-4911
		진천나눔과기쁨푸드뱅크	진천읍 진광로 70 105호	536-0129
	청주시	청주시흥덕푸드뱅크	흥덕구 무심서로 665	267-1377
		청주구세군푸드뱅크	상당구 수영로 246번길 32-2	254-1377
		청주사랑나눔푸드뱅크	흥덕구 풍산로 25번길 38-7	266-1377
		청주드림푸드뱅크	상당구 울봉로 176번길 56-10	218-7991
		청주제일기초푸드뱅크	상당구 상당로 13번길 15	256-3816
		청원군푸드뱅크	청원구 내수읍 청암로 34	218-1377
		청원새영푸드뱅크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 35	218-2605
청원대청푸드뱅크		청원구 문의면 두모1길 13-8	221-7838	
충주시푸드뱅크		주공길 7	855-3000	
충남 (22개소)	광역	충남광역푸드뱅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8 흥인오피스텔 903호	070-4099-5674
	공주시	고은카리타스푸드뱅크	우성면 역골2길 35-5	041)858-1237
		공주시푸드뱅크	신기동길 48-8	857-6004
	금산군	금산군푸드뱅크	군북면 일흔이재로 112	752-7942
	논산시	논산사랑푸드뱅크	생외길 14	736-1004
		논산부적푸드뱅크	부적면 반송2길 5	734-1512
	당진시	당진시나눔푸드뱅크	시청1로 38	357-4343
	보령시	보령시푸드뱅크	주공로 50	936-8501
		행복보령푸드뱅크	보령시 원동1길 95	931-8502
	부여군	부여나눔푸드뱅크	규암면 합송서로 128-3	832-0811~2

구 분	사업장 명칭	소 재 지	일반전화	
	서산시	서산시푸드뱅크	서해로 3456	667-2303~4
	서천군	서천군좋은친구푸드뱅크	서천읍 군사길 1-2	952-1414
	아산시	아산시푸드뱅크	배방읍 복수로 35	534-1377
	계룡시	계룡시사랑나눔푸드뱅크	계룡시 계룡대로 320, 402호	551-9191
	예산군	예산군푸드뱅크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318	334-4804
	천안시	천안시푸드뱅크	서북구 노태산로 21	907-1377
		천안서부푸드뱅크	동남구 태조산길 13-31	070-7547-8109
		충남가톨릭농수산물 지원센터(푸드뱅크)	서북구 천안대로 1347	582-1388
	청양군	청양군푸드뱅크	운곡면 백암동길 37-25	944-1500
	태안군	태안군푸드뱅크	태안읍 군청2길 2	675-1379
	홍성군	홍성군푸드뱅크	은하면 구성남로 381	041-642-6636
희망의나눔서해푸드뱅크		홍성읍 대내길 97	041-631-2610	
전북 (16개소)	광역시	전북광역시푸드뱅크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83	063)224-1861
	고창군	고창군푸드뱅크	고창읍 모양성로 116-13	561-2350
		선운푸드뱅크	전봉준로 88-15	561-1378
	군산시	군산시푸드뱅크	칠성로 59	461-6556
	김제시	김제시푸드뱅크	금성로 93	543-1377
	남원시	남원시푸드뱅크	노송로 1255-9	635-5252
	무주군	무주군푸드뱅크	무주읍 단천로 47	322-1370
	부안군	부안군푸드뱅크	부안읍 행안면 월륜길 5	581-5723
	순창군	순창군푸드뱅크	순창읍 옥천로 66	653-9130
	완주군	완주군푸드뱅크	봉동읍 봉동로 98	232-1377
	익산시	익산시푸드뱅크	익산대로 415-7	856-2385
	임실군	임실군푸드뱅크	관촌면 공덕1길 39	643-6688
	장수군	장수군푸드뱅크	장수읍 시장로 27-9	351-2792
	전주시	전주시푸드뱅크	완산구 소대배기로 18-34	222-7383
	정읍시	정읍시푸드뱅크	수성2로 13-18	533-1916
	진안군	진안군푸드뱅크	진안읍 거북바위로3길 30	432-9007
전남 (24개소)	광역시	전남광역시푸드뱅크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1층 (전남사회복지회관)	061)285-8945
	강진군	강진군푸드뱅크	강진읍 초지길 21, 3층	430-3166
	고흥군	고흥군푸드뱅크	고흥읍 동주공길 9, 2층	832-2500
	곡성군	곡성군푸드뱅크	곡성읍 읍내19길 8	363-2171
광양시	광양시푸드뱅크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77, 새마을금고2층 1호	762-9894	

구 분	사업장 명칭	소 재 지	일반전화	
	구례군	구례군푸드뱅크	구례읍 의료원길 7-4	783-1378
	나주시	나주시푸드뱅크	남산길 45-12	332-8992
	담양군	담양군푸드뱅크	월산면 월신평길 79-14	381-1376
	목포시	예향참맛푸드뱅크	해안로173번길 34	242-8980
	무안군	무안군푸드뱅크	일로읍 삼일로 493	283-1888
	보성군	보성군푸드뱅크	동인길 18-6	852-9845
	순천시	순천시푸드뱅크	저전길 84	741-3062
	신안군	신안군푸드뱅크	압해읍 추섬길 213	271-9635
		여수시	여수시푸드뱅크	여문2로 11-10
	여수시	여수시쌍봉푸드뱅크	학동서4길 58-20	682-1477
	영광군	영광군푸드뱅크	영광읍 중앙로4길 7	353-9740
	영암군	영암군푸드뱅크	영암읍 새동네길 22-1	471-9933
	완도군	사랑나눔은행푸드뱅크	완도읍 천해진남로 23번길 9	554-1377
	장성군	장성군푸드뱅크	장성읍 매화1길 8	393-2271
	장흥군	장흥군푸드뱅크	장흥읍 흥성로 55	864-7896
	진도군	진도군푸드뱅크	진도읍 옥주길 27-1	542-1388
	함평군	함평군푸드뱅크	신광면 균유로 442	323-9723
	해남군	해남군푸드뱅크	해남군 서림길 5	534-8253
화순군	화순군푸드뱅크	춘양면 학포로 1303-1	371-1377	
경북 (20개소)	광역	경북광역푸드뱅크	경북 경산시 자인면 계정길 18-4, 2층	053)812-1378
	경산시	경산시푸드뱅크	경청로 222길 79	053)813-1102
	경주시	경주시푸드뱅크	승삼1길 32	054)771-8107
	구미시	구미푸드뱅크	문장로 110	054)458-0230
	김천시	김천시푸드뱅크	모암길3	054)439-2191
	문경시	문경시푸드뱅크	시청1길 16	054)555-2800
	상주시	상주시푸드뱅크	냉림2길 111	054)532-5688
	성주군	성주군푸드뱅크	수륜면 성주가야산로 616	054)932-3551
	안동시	안동시푸드뱅크	북주 5길 23-17	054)858-1361
	영주시	영주시푸드뱅크	대학로 130-1	054)636-0834
		영천시	영천시푸드뱅크	한방로 195-6
	영천시	영천시푸드뱅크	언하1길 22-3	054)333-5733
	울진군	울진군푸드뱅크	후포면 후로삼울로 49-1	054)788-2111
	의성군	의성군푸드뱅크	의성읍 북원3길 51-6	054)834-2900
	청도군	청도군푸드뱅크	화양읍 청화로 79-11	054)373-7575
칠곡군	칠곡군푸드뱅크	관문로1길 32 교육문화회관	054)979-5127	

구 분		사업장 명칭	소 재 지	일반전화
	포항시	포항시푸드뱅크	북구 흥해읍 대련리 385-6	054)255-1377
		복지세상내일을여는집푸드뱅크	북구 장성동 삼흥로 35번길	054)244-1377
		경동푸드뱅크	남구 오천읍 해병로 347번길 34	054)291-0191
		흥해제일푸드뱅크	북구 흥해읍 한동로 43번길	054)261-7521
경남 (20개소)	광역시	경남광역시푸드뱅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70	055)298-9108
	거제시	거제시푸드뱅크	고현로2길 42	632-0400
	거창군	거창군푸드뱅크	거창읍 아림로 66	940-3872
		거창군푸드뱅크	마리면 거안로 1029	943-3114
	고성군	고성군푸드뱅크	동외로156번길 36	674-2001
	김해시	김해이웃사랑푸드뱅크	분성로 376번길 21-10	336-2121
	남해군	남해군푸드뱅크	남해읍 망운로 32	860-3807
	밀양시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가곡동 455	355-7484
	사천시	사천시푸드뱅크	동금5길 15	831-2533
	양산시	양산시푸드뱅크	물금읍 오봉10길 8	365-9544
	진주시	진주시푸드뱅크	진주대로 1087번길 5-4	747-1377
	창녕군	창녕군푸드뱅크	창녕읍 조산서재골로 7	532-0624
	창원시	마산푸드뱅크	마산회원구 상곡로 49	231-8017
		진해푸드뱅크	진해구 진해대로 1101	540-0114
		창원시희망푸드뱅크	의창구 창의대로 600번길 2	253-1377
	통영시	통영시푸드뱅크	안개4길 94	646-1377
	하동군	하동군푸드뱅크	하동읍 청년회관길 13	884-6955
	함안군	함안군푸드뱅크	말산로 5	580-2454
	함양군	함양푸드뱅크	함양읍 월명길 12	962-2071
	합천군	합천푸드뱅크	합천읍 중앙로 33-2	931-2370
제주 (4개소)	광역시	제주광역시푸드뱅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12-1	064)759-1377
	서귀포시	서귀포시구세군푸드뱅크	현청로 6	733-3791
	제주시	제주구세군푸드뱅크	광양7길 34	751-1377
		제주북부푸드뱅크	한림상로 207-9	796-9093

푸드마켓

(2015년 12월 현재)

구 분	사업장 명칭	소 재 지	일반전화	
서울 (32개소)	강남구	강남구푸드마켓1호점	개포로 605 강남장애인문화복지관	02)554-1377
		강남구푸드마켓2호점	삼성로72길 7	565-0377
		강남사랑나눔 이동푸드마켓	삼성로72길 7	556-3266
	강동구	강동구푸드마켓	동남로 926	427-1377
	강북구	행복나눔 강북푸드마켓	삼각산로 119 중앙빌딩 2층	991-1377
	강서구	강서사랑나눔푸드마켓	공항대로2가길 5, 1층	2635-1377
	관악구	관악구푸드마켓	신림로58길 13	872-1377
	광진구	광진구푸드마켓	군자로 34	499-1377
	구로구	구로희망푸드마켓	구로동로50길 10	869-1378
	금천구	금천구푸드마켓	독산로 165-1	3286-1377
	노원구	노원푸드마켓	동일로 1229 노원구민회관 B1층	975-1277
		푸드나눔카페2호점	공릉동 680 태릉입구역사내	905-1377
	도봉구	도봉푸드마켓	창동 20 4호선 창동역사 1층	907-1377
	동대문구	동대문구푸드마켓	천호대로2길 23-9	2246-0036
	동작구	동작푸드마켓	사당로 215	817-1377
	마포구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1호점	월드컵로 235 농수산물시장내 1층	364-1377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2호점	백범로 227	702-1377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3호점	신촌로26길	703-1377
	서대문구	서대문정담은푸드마켓1호점	독립문로 50	392-1377
		서대문정담은푸드마켓2호점	세검정로 831	1392-1377
	서초구	서포구푸드마켓	바우외로 43	577-5864
	성동구	성동희망푸드마켓	성동구 왕십리로 28길 10 준희빌딩	425-1377
	성북구	성북푸드마켓1호점	안암로3길 67 진빌딩 1층	981-1377
		성북푸드마켓2호점	화랑로 112, 게이또빌딩 1층	765-1377
	송파구	송파구푸드마켓	마천로 51길 2	2043-1377
	양천구	양천구해누리푸드마켓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250 양천나눔 누리센터 1층	2062-1377
	영등포구	영등포사랑나눔푸드마켓2호점	버드나루로22길 5, 101호	2632-1377
	용산구	용산사랑나눔푸드마켓	한강대로 345	703-0129
	은평구	은평푸드마켓	서우릉로 134-5	359-1377
		푸드나눔카페1호점	불광동 281 불광역사 내	907-1377
종로구	종로구이웃사랑나눔푸드마켓	지봉로 86, 송인1동주민센터 4층	2148-4102	
중구	행복더하기푸드마켓	퇴계로 460	2297-1377	
중랑구	중랑구푸드마켓	봉화산로 56길 22	493-1582	

구 분	사업장 명칭	소 재 지	일반전화	
부산 (12개소)	금정구	금정구푸드마켓	중앙대로 1992	051)911-1377
	남구	남구동행푸드마켓	부산시 남구 진남로 59	638-1377
	동래구	등대지기 푸드마켓	석사북로 59-1	506-1377
	부산진구	부산진구푸드마켓	중앙대로 882	853-1377
	북구	행복나눔푸드마켓	의성로 115번길 11	335-8377
	사상구	사상구푸드마켓	동주로 6-9	325-1399
	사하구	사하사랑나눔푸드마켓	다대로 544, 205호	262-1377
	서구	푸르미&나누미푸드마켓	구덕로 301번길 5	941-1367
	수영구	함께하는 푸드마켓	연수로 249 12-18	756-1925
	영도구	영도구푸드마켓	영도구 동삼동 태종로 514	405-1377
	중구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영주동 551-7	463-1388
해운대구	해운대푸드마켓	재반로 51	781-1373	
대구 (7개소)	남구	늘해랑 푸드마켓	봉덕로5길 9	053)473-1377
	달서구	달서구스마일링푸드마켓	달서구 구마로 14남길	636-1377
	북구	북구사랑나눔푸드마켓	칠곡중앙대로91길 5	321-1377
		북구희망나눔푸드마켓	대구체육관로 28	954-1377
	중구	행복한중구푸드마켓	남산로 29-1	256-1377
		중구만나푸드마켓	동덕로 26길 121	257-1377
달성군	행복한 다사푸드마켓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01-6	588-1375	
인천 (14개소)	강화군	강화군푸드마켓	강화읍 향나무길22번길 12	032)934-0808
	계양구	계양구푸드마켓	계양구 계양대로 126	551-1377
	남구	남구푸드마켓1호점	남구 경인로 333	875-1377
		남구푸드마켓2호점	남구 인주대로 128	889-1377
	남동구	남동구푸드마켓1호점	남동구 소래로 645	469-1377
		남동구푸드마켓2호점	남동구 백범로 371	431-1377
	동구	동구푸드마켓1호점	동구 금곡로 81번길 27	773-2377
	부평구	부평구푸드마켓1호점	부평구 수변로 107번길 56	426-1377
		부평구푸드마켓2호점	부평구 경원대로 1367번길 18	511-1377
	서구	서구푸드마켓1호점	서구 승학로 233	576-1377
		서구푸드마켓2호점	서구 거북로 124	584-1377
	연수구	연수구푸드마켓1호점	연수구 비류대로 519번길 30-2	817-1377
		연수구푸드마켓2호점	연수구 청량로 184번길 17	834-2377
	중구	중구푸드마켓	중구 홍예문로 77	777-0377
광주 (3개소)	북구	행복나눔푸드마켓 북구점	오치동 969-1	062)264-1377
	서구	행복나눔푸드마켓 서구점	염화로 119	374-1377
	광산구	광산나눔드리푸드마켓	무진대로 212번길 29-27	945-1377

구 분		사업장 명칭	소 재 지	일반전화
대전 (8개소)	대덕구	대전행복나눔무지개 푸드마켓3호점	계족로 608번길 15	042)637-1377
	동구	대전행복나눔무지개 푸드마켓2호점	동대전로 102-1	633-1377
		대전행복나눔무지개 푸드마켓7호점	동구청로 203번길 1	286-1377
	서구	대전행복나눔무지개 푸드마켓1호점	계룡로 367번길 107	488-1370
		대전행복나눔무지개 푸드마켓8호점	도마5길11	528-5290
	유성구	대전행복나눔무지개 푸드마켓4호점	봉산로36번길 1	935-1377
		대전행복나눔무지개 푸드마켓6호점	계룡로 88번길 50	826-6377
	중구	대전행복나눔무지개 푸드마켓5호점	보문로 142	042)256-1377
울산 (2개소)	남구	남구나눔푸드마켓	봉월로50번길 45	052)252-1377
	울주군	울주푸드마켓	울주군 동문길 51	229-9190
세종 (1개)	세종시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	조치원5길 30	044)868-1311
경기 (17개소)	고양시	고양시한아름푸드마켓	호수로 446번길 55	031)902-1377
	광명시	광명푸드마켓행복바구니	광삼로 9, 1층	02)2619-1370
	남양주시	남양주시푸드마켓	진건읍 사릉로 406-1	031)528-1668
		남양주희망나눔동부푸드마켓	화도읍 마석중앙로 79	591-1062
	부천시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원미구 부흥로 315번길 14 포비스타오피스텔 106호	032)324-1688
	성남시	성남열린푸드마켓	분당구 탄천로 215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 상점 17호	031)756-1378
	수원시	해누리푸드마켓	팔달구 경수대로 441	238-1378
	시흥시	시흥푸드마켓	봉우재로 23-26 1층	434-1378
		시흥신천푸드마켓	신천로 79번길 26	318-1366
	양주시	양주연화푸드마켓	평화로 1679	861-1377
	의정부시	의정부자비푸드마켓	경의로 192 화랑빌딩 1층	829-6114
	이천시	사랑나눔이천푸드마켓	경충대로2638번길 35	638-1375
	파주시	파주시희망푸드마켓	교하로 914 아이리스빌딩 107호	949-2215
	평택시	평택푸드마켓2호점	송탄로 191	664-1377
평택푸드마켓1호점		평택로 149 평택상공회의소 1층	618-1877	

구 분		사업장 명칭	소 재 지	일반전화
	화성시	화성시행복나눔푸드마켓	향남읍 행정중앙1로 30	8059-1677
		화성시나래올푸드마켓	여울로2길 33-12	8015-7400
강원 (1개소)	원주시	원주시푸드마켓	갈머리2길 31 원주시사회복지센터1층	033)747-1347
충북 (5개소)	괴산군	괴산군푸드마켓	괴산읍 괴강로 15	043)834-1377
	단양군	단양군푸드마켓	단양읍 수변로 83	422-1700
	제천시	제천시푸드마켓	동명로 50	647-1377
	청주시	청주시푸드마켓	상당구 남사로 83번길 35	043)222-9171
	충주시	충주시푸드마켓	용산로 32-1	855-1377
충남 (6개소)	논산시	논산사랑푸드마켓	관촌로277번길 23-13	041)736-1377
	보령시	행복보령푸드마켓	보령남로 9 세영타워빌딩 105호	931-8502
	서천군	서천군좋은친구푸드마켓	서천읍 군사길 1-2	951-9444
	예산군	예산다다푸드마켓	예산읍 임성로23번길 6	335-8700
	천안시	천안희망나눔푸드마켓	서북구 백석로 222	573-1377
	홍성군	홍성서해푸드마켓	홍성읍 홍장북로 480	634-7377
전북 (5개소)	고창군	고창군푸드마켓	전봉준로 96	063)561-1378
	김제시	김제시푸드마켓	금성로 93	543-1377
	무주군	무주군푸드마켓	무주읍 단천로 47	322-1370
	익산시	익산시푸드마켓	중앙로7길 2-9	854-1377
	전주시	전주시행복나눔푸드마켓	완산구 꽃밭정로 21	286-1377
전남 (3개소)	목포시	햇살나눔푸드마켓1호점	백년대로 380, 4층	061)283-1477
	여수시	햇살나눔푸드마켓2호점	한재로 182, 1층	642-1477
	영광군	영광군푸드마켓	영광읍 중앙로4길 7	353-9740
경북 (3개소)	경산시	경산시푸드마켓	경청로219길 3-2	053)802-1377
	구미시	구미시푸드마켓	구미시 문장로 110	443-1377
	영주시	영주시푸드마켓	대학로 130-1	637-1378
영주시 푸드마켓 폐소	포항시	포항시푸드마켓	남구 송도로 51	231-1377
경남 (4개소)	김해시	김해시푸드마켓	금관대로 1205	055)328-1377
	진주시	진주시푸드마켓	진주대로 1087번길 5-4	747-1377
	창원시	창원시희망푸드마켓	의창구 창의대로 600번길 2	283-1377
	통영시	통영나눔푸드마켓	안개로 36-43 국제상가아파트 1층	055)646-1377
제주 (2개)	제주시	제주사랑나눔푸드마켓	동광로 85	064)758-1377
	서귀포시	서귀포행복나눔푸드마켓	서문로 30	733-1388